

양산시민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소통



양산시의회
YANGSANCITYCOUNCIL

소통하는 열린의정 역동적인 희망양산

본격적인 인구 35만 시대를 맞아
양산시의회의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시민이 꿈꾸는 행복도시 양산, 내일이 기다려지는 희망도시 양산.
양산시의회의는 다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시민에게 약속한 많은 일들을 하나 둘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을 실천으로
양산시의회의는 시민행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더 큰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글 실는 순서

CONTENTS



- 인사말 04
- 제7대 전반기 양산시의회 의원 05
-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06
- 의원의 임무 및 역할 07
- 2019년 상반기 의정활동 결산 08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1
-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20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결과 22
- 의원발의 조례 24
- 2019년도 상반기 의안심사 36
 - 제160회 임시회
 - 제161회 임시회
 - 제162회 제1차 정례회
- 5분 자유발언 56
- 시정질문 86
- 건의문 88
- 민원처리현황 97
- 의정활동 엿보기 103
- 현장활동 106
- 벤치마킹 107
- 의정활동 이모조모 108
- 의회 청사배치도 112
- 시의회 회의 생방송 시청 안내 113



■ 인사말 ■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양산을 만들기 위해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어느덧 제7대 전반기 양산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17명 의원 모두가 지역의 일꾼으로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며 시민의 눈과 귀, 그리고 목소리의 역할에 충실하여 35만 시민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는 데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7대 전반기 남은 1년 동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35만 양산시민이 주신 가장 고귀한 시의회의 책무임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양산을 만들기 위해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35만 양산시민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한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양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양산시의회 의장 서진부



제7대 전반기 양산시의회 의원

의장 단

Chairman & Vice chairman



의장 서진부
(서창·소주)



부의장 김효진
(물금·원동)

의회운영위원회

Counsil Steering Committee



위원장 박일배
(병산·덕계)



부위원장 박미해
(비례대표)



위원 김효진
(물금·원동)



위원 박재우
(상북·하북·강서)



위원 이장호
(서창·소주)

기획행정위원회

Planning & Administrative Committee



위원장 정석자
(동면·양주)



부위원장 김혜림
(물금·원동)



위원 김효진
(물금·원동)



위원 이종희
(상북·하북·강서)



위원 곽종포
(물금·원동)



위원 박재우
(상북·하북·강서)



위원 박미해
(비례대표)



위원 정숙남
(비례대표)

도시건설위원회

City & Construction Committee



위원장 임정섭
(물금·원동)



부위원장 문신우
(중앙·삼정)



위원 박일배
(병산·덕계)



위원 이상정
(병산·덕계)



위원 이용식
(중앙·삼정)



위원 김태우
(동면·양주)



위원 최선호
(동면·양주)



위원 이장호
(서창·소주)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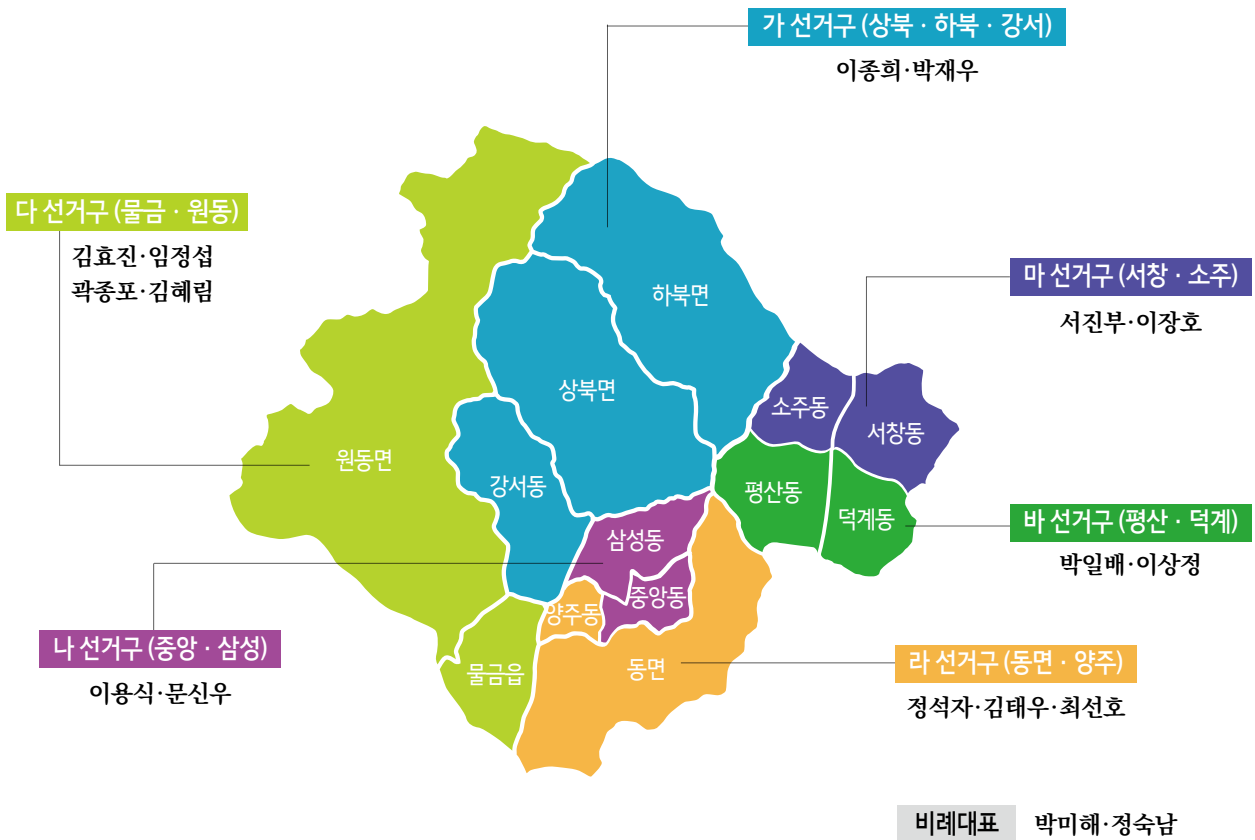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의 임무

-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니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무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원의 역할

-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정책결정자, 갈등 조정자, 행정 감시자이며,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며,
-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처리하며,
- 조직운영에 있어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질서유지권, 의원징계권 등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진다.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중심의 다양한 의정활동 펼쳐

28일간의 회기,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안건 94건 처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기 위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

시민중심의 다양한 의정활동 펼쳐

양산시의회는 2019년 상반기에 정례회 1회 20일, 임시회 2회 8일 등 총 28일의 회기를 통해 94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4일동안 39곳의 현장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의안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조례안 60건, 규칙안 1건, 예산·결산안 2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건의안 6건, 기타안건 18건 등이다.

또한 의원들의 시정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정활동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건의안 등으로 이어졌다.

제160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박종포 의원은 토교에서 물금까지 개설되어 있는 지방도 1022호선의 확장을 위해 경남도에서 시행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양산시장에게 당부하였고, 최선호 의원은 동면 석·금산 신도시에 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용식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건립과 운영행태 변경, 인적 인프라 구축 등을 촉구했다.

박재우 의원은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양산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보존하고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하여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으며, 박미해 의원은 故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기념하기 위해 가칭 “김복동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였으며, 이종희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탈락한 것을 계기로 삼아 공모사업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정숙남 의원은 물금신도시 중산역에 공영주차장과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김효진 의원은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양산타워의 조명을 활용하여 공기질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석자 의원은 양산시에 매설된 온수예열 공법의 열송수관을 전기예열 공법의 열송수관으로의 점차적인 교체를 제안하고 전기예열 공법의 열송수관의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김효진 의원은 “시는 양산부산대학교 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을 부산대학교의 반대로 인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며 물금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양산부산대학교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에 대한 양산시의 추진의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양산시장은 “2016년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반영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당시 위원회 심의시 대학교 내 통과도로는 교육환경 저해, 녹지 단절, 부산대학교와 지역주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으로 유보되어 재정비(안)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후 다각적인 도로개설 방안을 검토하여 부산대학교측과 협의를 한 결과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지하차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일부구간 지하차도를 개설할 때에도 750여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바, 양산부산대학교 캠퍼스 자체 내부 통과도로를 개설토록



부산대학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건의안을 통해 이용식 의원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김해 매리 ~ 양산 구간이 공사 완료시, 신기교차로 구간에 교통정체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양산 신기교차로 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으로 지정하고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국도 제35호선 13번 교차로에 지하차도 설치를 반영해 줄 것을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남도지사에게 건의했고, 박일배 의원은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 공동 촉구 건의문’을 통해 양산시의회가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KTX 중간역사 설치 건의문’을 채택하여 보냈음에도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양산시의회의 건의안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며, 이에 뒷짐만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양산시의회는 금정구의회, 기장군의회와 공동으로 인근지역 150만의 염원인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를 재차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제161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이용식 의원은 양산시장에게 원도심의 지반침하에 따른 원인규명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였으며, 이종희 의원은 양산의 3·1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을 위한 학술용역 등을 양산시장에게 요구했으며, 문신우 의원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최선호 의원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양산시에 당부했다.

건의안을 통해 김효진 의원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를 1994년 양산신도시 조성 당시 물금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2003년 토지이용계획 변경에서 부산대학교 일부 단과대학의 이전 계획에 따라 취소되었고, 당시 협의한 부산대학교 단과대학의 이전은 무산되었으며, 이후 실버산학단지 미개발로 인해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양산신도시의 단절로 출·퇴근 시간의 병목현상은 물론 가까운 거리를 두고 돌아가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부산대학교에 당초 계획되어 있었던 실버산학단지 조성과 그 기반 도로인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1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박일배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산수변공원에 장애인 전용 파크 골프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75% 시민의 주거 공간인 공동주택의 비리 발생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특별자문단 구성 및 양산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 등 공정한 공동주택관리

를 위해 양산시가 적극적 행정으로 개입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며, 최선호 의원은 법기수원지의 전면 개방과 수원지의 관리권을 양산시에서 확보하고, 법기마을 일대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양산시에 요구했다.

박미해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대기질 관리 개선을 위한 통합컨트롤 타워 설치 등을 제안했고, 정석자 의원은 양주동의 주거, 상권, 안전을 위한 송전탑 및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촉구하고 젊음의 거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안했으며, 김혜림 의원은 양산시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팀 신설과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종희 의원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고, 박종포 의원은 관광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물금 광산 개발의 재추진하여 줄 것을 양산시에 요구했으며, 문신우 의원은 삼성동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산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여 환경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몇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통해 이장호 의원은 양산시 동부지역(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동면, 양주동 포함)이 소방행정 서비스의 미흡으로 시민의 재산 및 안전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동부지역에 조성중인 대규모 주택단지와 산단의 준공과 신설 계획들로 인해

소방 및 안전 복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가칭)동부소방서 신설을 통해 동부지역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상남도에 건의했으며, 박일배 의원은 34만 5천 볼트의 두 개 송전선로가 웅상지역 중 평산동 도심 중심지를 지나가고 있어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주변 학교 등의 아이들이 고압선 인근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웅상지역 송전선로 및 송전탑 도심구간의 지중화 추진을 국회, 한국전력공사, 양산시에 건의했다.

김효진 의원은 백농 이규홍 선생의 항일독립행적을 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 당시 증언, 2019년 2월 11일자 동아일보에 본인께서 직접 기고한 연설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한 사진 등 많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일제의 침탈에 결연히 항거했던 양산의 독립운동가 백농 이규홍 선생의 공적을 잘 살펴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에 건의했다.

그 밖에도 비회기 기간에는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회운영에 따른 협의사항 처리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크고 작은 민원 30건을 해결했다.

■ 회기 및 안건처리 현황

구분	회기	안건처리현황						
		계	조례안·규칙안	예산·결산·기금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건의안	기타 안건
계	28 일간	94	61	2	1	6	6	18
제 160 회 임시회	2019. 3. 4. ~ 3. 8.(5일간)	33	18	1	1	4	2	7
제 161 회 임시회	2019. 4. 17. ~ 4. 19.(3일간)	19	17	-	-	-	1	1
제 162 회 제 1 차 정례회	2019. 6. 5. ~ 6. 24.(20일간)	42	26	1	-	2	3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 감사
시정·처리요구 85건, 건의 145건 등 230건 채택

양산시의회의는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한데 이어 제16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양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산시와 양산시 소속 기관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별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장 확인, 감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의원들은 감사 기간은 물론 감사 기간 전부터 현장 확인, 시민여론 청취, 집행부 자료 요구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7대 양산시의회의 의원들은 의

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회 전체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시의회의는 감사기간 동안 모두 230건에 대해 시정·처리요구 85건, 건의 145건 등 지적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채택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쳤다.

서진부 양산시의회의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지체 없이 개선점을 찾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시정을 펼쳐주 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실과별	처리 의견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
의회사무국	5	2	3

소관별	지적사항	처리 의견
의회사무국	- 방문기념품 구입 품목 다양화 - 의회 물품 관리 현황 현행화	시정·처리요구
	- 의정활동 홍보 강화 - 추가 상임위 설치에 대비한 청사 계획 수립 - 의원 출장용 소형 전기차 구입	건의

■ 기획행정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실 과 별		처리 의견		
		계	건의	시정·처리요구
합 계		129	87	42
공 통		3	1	2
기획예산담당관		8	5	3
시설관리공단		2	2	0
소통담당관		4	2	2
감사담당관		1	1	0
평생교육담당관		6	5	1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	10	8	2
	사회복지과	11	8	3
	복지재단	5	4	1
	여성가족과	8	4	4
	아동보육과	4	1	3
	문화관광과	13	7	6
	체육지원과	9	8	1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15	11	4
	세무과	0	0	0
	징수과	2	1	1
	위생과	3	1	2
행정지원국	행정과	6	5	1
	회계과	5	4	1
	정보통계과	4	3	1
	토지정보과	0	0	0
웅상출장소	총무과	0	0	0
	복지문화과	3	1	2
보건소	보건행정과	2	2	0
	건강증진과	0	0	0
	웅상보건지소	0	0	0
시립박물관		3	3	0
시립도서관		1	0	1
읍·면·동		1	0	1

소관부서	지적사항	조치계획
공통	신문구독료 집행 철저	시정·처리요구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각 공사 발주시 설계변경 과다	건의
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 투자심사 업무 철저	건의
	예산성과금 지급 철저	건의
	예비비 집행 철저	건의
	생활공감모니터 활동 철저	시정·처리요구
	정책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의
	각종위원회 운영 철저	시정·처리요구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각종 센터 설립 현황 파악	시정·처리요구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협력 강화	건의
시설관리공단	신규 사업 시행시 사전 준비 철저	건의
	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객 안전관리 철저	건의
소통담당관	사이버 홍보 철저	시정·처리요구
	홍보대사 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공무원 친절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홍보 철저	건의
	홍보, 공보로 지급 관련 업무 철저	건의
감사담당관	청렴도 관리 철저	건의
평생교육담당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 철저	건의
	영어교육관련 사업 추진 철저	건의
	평생학습 박람회 분리 검토 및 확대 방안 마련	건의
	인재육성재단 운영 현황	시정·처리요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철저	건의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검토	건의
주민생활지원과	효율적인 수급자 발굴단체 운용	건의
	수급자 발굴 및 관찰 철저	건의
	부정 수급자 관리 철저	건의
	탈 수급을 위한 노력 당부	건의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활성화	건의
	희망키움통장2와 청년희망키움통장 집행을 제고	건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권장	건의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 관련	건의
	자활기금 집행 관련	시정·처리요구
	현충일 행사시 충훈탑 계단 안전대책 수립	시정·처리요구
	종합사회복지관 세부사업 집행을 제고	시정·처리요구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 관련	건의
	불우이웃돕기 기탁금 공평배분 철저	건의
	경로당 이용 어르신 갈등 해소방안 연구	건의

소관부서	지적사항	조치계획
사회복지과	임대아파트 어르신 경로당 이용 방안 연구	건의
	경로당 안마의자 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조례상 수립해야할 (기본)계획 및 포괄계획 수립 촉구	건의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에 관하여	건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수요조사 철저	건의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 운영 및 상담지도 홍보 부족	건의
	‘집밥 행복충전데이’ 사업 본예산 편성하여 추진	시정·처리요구
복지재단	노인복지관 수익사업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상하북 노인복지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건의
	장애인의 날 행사 시 소통과 화합 필요	건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간의 갈등 조정	건의
	각 복지관의 활동사항 SNS를 통한 홍보 철저	건의
여성가족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집행 철저	건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시정·처리요구
	여성안심택배 무인시설 홍보 철저	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	시정·처리요구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과의 역할	건의
	인구정책팀의 역할에 대하여	건의
	여성복지센터 노후화와 이전에 따른 대책	시정·처리요구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여성정책 마련	시정·처리요구
아동보육과	어린이집 지도 점검 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24시간 이용 어린이집 활용방안 개선	건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	시정·처리요구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여부	시정·처리요구
문화관광과	삼장수마을 관광 자원화 사업 관련	건의
	문화재 보수 계획 수립 필요	건의
	증산왜성 관광자원 개발	건의
	양산의 민요 양산의 노래 발굴 및 홍보	건의
	원동매화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배내골 사과 축제 활성화	시정·처리요구
	삼량문화축전 행사 프로그램 계약관련	시정·처리요구
	가야진용신제 풍물 구성원 불화에 대하여	건의
	예산변경 부적정	시정·처리요구
	관광안내원 배치	건의
	양산예총 내부갈등 사태 해결 촉구	시정·처리요구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역문화진흥기금 활용	건의
	웅상문예원 수탁기관 선정 과정 부적절	시정·처리요구

소관부서	지적사항	조치계획
체육지원과	삼감게이트볼장 위치 부적절	건의
	양산하프마라톤 대회 홍보 다양화 필요	건의
	프로구단 및 전지훈련 팀 유치노력 필요	건의
	상복스포츠파크 운용방안 마련	건의
	여자축구단 전국단위 대회 유치 노력	건의
	초·중등부 영재육성 및 고등부 교기육성	건의
	물금읍 구장 예약관련	건의
	한여름 밤의 건강체조교실 운영관련	시정·처리요구
	초등학교 수영 실기교육 현장점검 필요	건의
일자리경제과	고용복지플러스 운영 활성화	건의
	소비자 상담실 전문성 확보	건의
	남부시장 전기 안전점검 등 화재 대비 철저	건의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	시정·처리요구
	불법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업무 철저	시정·처리요구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완료이후 개선점 마련	건의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하여 향후 지원에 반영해야 할 것임.	건의
	소규모 전통시장 지원방안 마련	건의
	정보화 마을 향후 운영상황 대비	건의
	무료통근버스 운행사업 종료 후 대책마련 부실	시정·처리요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철저	시정·처리요구
	남부시장 청년몰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청년 복지에 대한 관심 제고	건의
	사회적 기업 지원 육성계획 마련	건의
	면 단위 도시가스 노후 공급관 대책 마련	건의
징수과	기부물품 중 음식물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시정·처리요구
	생계형 체납자 구제 노력	건의
위생과	유통된 유해식품 회수방안 마련	시정·처리요구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영업점 관련	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제공 철저	시정·처리요구
행정과	업무추진비 집행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철저	시정·처리요구
	구내식당 운영 철저	건의
	민간단체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에 대하여	건의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건의
	읍면동 직원 총원 계획 관련	건의
회계과	미활용 시유지 관리 철저	건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 철저	건의
	청사관리 소규모 보수공사 철저	시정·처리요구

소관부서	지적사항	조치계획
회계과	본청 리모델링공사 철저	건의
	공유재산 관리 업무 철저	건의
정보통계과	시민 및 직원정보화 교육운영 개선	시정·처리요구
	공공앱 활용 방안 마련	건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 강구	건의
	경로당복지시스템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 대체 방안 검토	건의
(출)복지문화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철저	시정·처리요구
	웅상회야제 홍보 철저	건의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시정·처리요구
보건행정과	건강도시 관련 사업 추진 철저	건의
	방역관련 업무 철저	건의
시립박물관	박물관대학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건의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건의
	3·1 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증 철저	건의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원 기준 개선	시정·처리요구
읍·면·동 공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철저	시정·처리요구

■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실 과 별		처리 의견		
		계	건의	시정·처리요구
합 계		96	55	41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	12	4	8
	자원순환과	6	3	3
	산림과	5	4	1
	공원과	5	2	3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6	4	2
	도시계획과	4	2	2
	도로시설과	2	1	1
	도로관리과	5	3	2
	건설하천과	2	1	1
	교통과	3	1	2
개발주택국	지역재생과	6	4	2
	건축과	2	2	0
	공동주택과	1	0	1
	원스톱허가과	2	1	1

실 과 별		처리의견		
		계	건의	시정·처리요구
양방향노화산업국	양방향노화과	2	2	0
	투자유치과	6	2	4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3	2	1
	도시건설과	3	3	0
	허가과	1	0	1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6	1	5
	동물보호과	1	1	0
	농업기술과	3	3	0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5	4	1
	정수과	0	0	0
	하수과	4	4	0
차량등록사업소		1	1	0

소관부서	지적사항	조치계획
환경관리과	당곡천생태학습관 조성사업 추진 철저	건의
	삼성동 산막공단 악취 문제 해결 요구	시정·처리요구
	친환경 에너지타운 계획 및 운영 철저	건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수익성 계획 마련 등	시정·처리요구
	친환경 에너지타운 구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	시정·처리요구
	미세먼지 저감 관련 단속 철저 등	시정·처리요구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구입 가격 기준 마련	시정·처리요구
	미세먼지 저감 관련 용역 결과 반영 사업 실시	건의
	환경학교 및 미세먼지 대응교육 강의 내용 환류 실시	시정·처리요구
	국도비 보조금 반납 절차 이행	시정·처리요구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및 지도·단속 상시 시행	건의
	환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시정·처리요구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철저	시정·처리요구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관리방법 재검토	시정·처리요구
	환경미화원 거주지 인근 근무지 배치 검토	건의
	지역난방공사 진입로 가로등 관리 방식 재검토	건의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점검 철저	시정·처리요구
	유산폐기물매립장 관리계획 및 녹지 조성 검토	건의
산림과	밀원림 조성 사업	건의
	수목진료 컨설팅 사업 추진	건의
	전정 작업 후 잔가지 처리 방안 검토	건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사후 관리 철저	건의

소관부서	지적사항	조치계획
산림과	조림사업 이후 하자보수(고사목) 철거 이행	시정·처리요구
공원과 / 도시계획과 도로관리과	북정동 완충녹지 조성 사업 검토	시정·처리요구
공원과	수목 하자 보수 철거	시정·처리요구
	완충녹지 관리 일관성 있는 행정 당부	시정·처리요구
	인도 가로수 정비 및 인도 폭에 따른 가로수 식재 요청	건의
	설계비 낭비 사례가 없는지 검토	건의
안전총괄과	안전관련 용역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건의
	중부동 지반침하 지역 공동주택 우기 대비 당부	건의
	양산시 지반지도 조속히 구축	건의
	한파대비 승강장 발열 벤치 설치 재검토 및 대안 마련	시정·처리요구
	동부양산 소방서 적절한 위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시 심사숙고	시정·처리요구
도시계획과 / 도로시설과	사송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연계 사업 추진 노력 당부	건의
도시계획과	물금유원지 원활한 추진 위한 방안 검토	건의
	완충녹지지역 시설결정 해제 시 신중한 검토 필요	시정·처리요구
	주남마을 공업지역과의 완충지대 확보 검토	시정·처리요구
도로시설과	가로수 이식 관리 철거	시정·처리요구
	낙동강 강변자연문화 경관도로사업 조속 추진	건의
도로관리과	양산시민 자전거 보험금 지급 현황 파악 철거	시정·처리요구
	공공자전거 안전모 관리방안 검토	건의
	석계2일반산업단지 관리 이관 철거	건의
	통도 MTB 파크 활용 방안 모색	시정·처리요구
	유탐유블레스 아파트 ~ 양산초등학교 간 보도 확보	건의
건설하천과	북부천 펌핑시설 위치 변경 검토	건의
	소규모하천 정비 검토	시정·처리요구
교통과	남양산IC 교통체증 개선 검토	건의
	유탐유블레스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도로 간이설치물 단속	시정·처리요구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시정·처리요구
지역재생과	상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만전	건의
	상동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그린푸드직매장의 원활한 운영 위한 계획 수립 철거	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철거 및 공모 당선 노력 당부	건의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예상 문제점 검토 철거	건의
	구거점용 허가 부서 일원화	시정·처리요구
	사무 민간위탁 절차 이행 철거	시정·처리요구
건축과	간판정비 시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거	건의
	소규모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점검 필요	건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감사 및 관리·감독 철거	시정·처리요구

소관부서	지적사항	조치계획
원스톱허가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생활폐기물 보관함 지도 철저	건의
	개발행위 허가 시 주변 환경 및 여건 고려 등 업무 철저	시정·처리요구
양방향노화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노력 지속 당부	건의
	양방향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개관 준비 철저	건의
투자유치과	산막일반산업단지 3공구 공사장 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덕계월라일반산업단지 공사장 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가산일반산업단지 추진 안전	건의
	양산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조속 추진	시정·처리요구
	사업시행 시 현장여건 반영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시정·처리요구
	석계2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용지	건의
(출)경제교통과	최근 공장 폐업이 증가하는 사유를 분석하여 대응	건의
	밤샘불법주차 화물차 지도단속 철저	건의
	수목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출)도시건설과	LED가로등 교체 검토	건의
	웅상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추진 철저	건의
(출)도시건설과/감사담당관	소주도시계획도로(중1-23호선) 개설공사 시 자체감사 요구	건의
(출)허가과	비산먼지 배출시설 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농정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협약서 이행 관리·감독 철저	시정·처리요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차량운행 점검 확인 철저	시정·처리요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역할 재정립 및 농가와의 상생 요구	시정·처리요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휴무일 지정 검토	건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사회발전기금 지원사업	시정·처리요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가공식품 수수료 등 실태점검	시정·처리요구
동물보호과	잔반 재가공 사료 급여 농가 관리 철저	건의
농업기술과	다방동 녹차 군락지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건의
	동부양산 지역 초화류육묘장 설치 검토	건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 등 예산 반영 철저	건의
수도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 준비 철저	건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평가시스템 도입	건의
	상수도 검침원 운영 검토	건의
	고지대 원활한 상수도 공급 위한 가압장 설치 검토	건의
	상수도 요금 징수 철저 및 결손 최소화	시정·처리요구
하수과	회야하수처리장 공사 준공을 위한 관심 당부	건의
	회야하수처리장 시설 관리 이관	건의
	지하수위계측기 자료 활용 및 부서 간 공유	건의
	사유지 내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 재검토	건의
차량등록사업소	방치차량 및 대포차의 단속 철저	건의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세출예산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 성과보고서 등 지적

양산시의회는 지난 2019년 6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1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7일 양산시장이 양산시의회에 제출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최종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2천9백4십4억5천9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1천5백9십6억9천7백만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가 1천4십5억8천5백만원이었다. 또한, 세출 결산액은 1조3백7십3억5천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천5백7십1억 9백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전체 이월액이 1천5백2십6억5천2백만원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십1억8천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1천2억7천2백만원이었다.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신우 의원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에서 지적된 문제점으로 첫째, 세출예산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2018 회계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합계는 2천5백1십1억4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9.4%를 차지하여 매년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세출예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의 발생 최소화 노력해 줄 것을 말했다.

둘째, 성과보고서로 일부 성과지표 중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지표 부적절 등 성과계획서와 성과예산서 연계가 미흡한 점이 나타났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50%미만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성과예산에 대한 부서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며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신우 위원장은 “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외에도 결산검사 시 결산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8 회계연도 결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294,459	1,037,350	257,109	152,652	113,836	37,801	1,014	4,185	100,272
일반회계	1,159,697	960,685	199,012	149,527	111,215	37,296	1,014	4,126	45,359
특별회계	134,762	76,665	58,097	3,126	2,621	505	0	59	54,912
공기업 특별회계	104,585	60,057	44,528	3,126	2,621	505	0	0	41,402
기타 특별회계	30,177	16,608	13,569	0	0	0	0	59	13,510



- 1) 계속비집행 : 1,873백만원
- 2) 기금현재액 : 49,398백만원
- 3) 채권현재액 : 8,619백만원
- 4) 채무현재액 : 없음
- 5) 공유재산 현재액
 - 토 지 : 32,992천㎡ 1,707,995백만원
 - 건 물 : 497천㎡ 460,750백만원
 - 기 타 : 619,968건 1,146,162백만원
- 6) 물품현재액 : 1,192종 15,212백만원
- 7) 예비비 지출
 - 일반회계 :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 14,332백만원 중 1,601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71백만원을 지출하고, 288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 :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 2,100백만원 중 지출결정액 없음
 - 기타특별회계 :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 11,456백만원 중 지출결정액 없음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재산상태	계	상수도	하수도
자산총액	637,776	253,477	384,299
부채총액	76,233	73	76,160
자본총액	561,543	253,404	308,139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중심의 예산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수립

양산시의회는 2019년 3월 8일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

양산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2천286억8천688만9천원이다.

기정예산액 1조1천405억9천645만4천원 대비 7.72%인 880억9천043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8천579억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88억5천455만6천원 대비 7.63%인 769억3천552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특별회계는 1천428억9천68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317억4천189만8천원 대비 8.47%인 111억5천491만4천원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양산시의회는 양산시가 심의 요청한 1조2천286억8천688만9천원가운데 예산안 항목 하나하나 심의에 신중을 가해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세출분야는 36억8천731만7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가결, 세출분야 역시 원안가결 한 뒤 의결했다.

■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위원회별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금 회	증감률
				증·감(△)	
합 계	계	1,228,686,889	1,140,596,454	88,090,435	7.72%
	일반회계	1,085,790,077	1,008,854,556	76,935,521	7.63%
	특별회계	142,896,812	131,741,898	11,154,914	8.47%
의회운영 위원회	소 계	3,184,507	3,143,056	41,451	1.32%
	일반회계	3,184,507	3,143,056	41,451	1.32%
	특별회계	-	-	-	-
기획행정 위원회	소 계	592,284,552	576,691,187	15,593,365	2.70%
	일반회계	588,566,802	573,472,560	15,094,242	2.63%
	특별회계	3,717,750	3,218,627	499,123	15.51%
도시건설 위원회	소 계	633,217,830	560,762,211	72,455,619	12.92%
	일반회계	494,038,768	432,238,940	61,799,828	14.30%
	특별회계	139,179,062	128,523,271	10,655,791	8.29%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분야(일반회계) 삭감액 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액	수정액	삭감내역	비고 (삭감사유)
		21건	5,564,317	3,687,317	1,877,000		
기획관	401-01(시설비)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120,000	120,000	-	시비	사업 부적정
주민생활 지원과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2,457,000	610,000	1,847,000	시비	월남참전명예수당 3월분중복편성
문화 관광과	307-03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양산삼랑문화축전추진위원회 운영비(해외출장여비및유류비)	6,100	6,100	-	시비	사업 효과성 미비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양산삼랑문화축전추진위원회 업무용차량구입	15,600	15,600	-	시비	사업 효과성 미비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아름다운 한복입기대회 지원	15,000	15,000	-	시비	사업 부적정
	401-01(시설비)	양산시립전통박물관(가칭) 설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5,000	25,000	-	시비	사업 부적정
	401-01(시설비)	양산궁중꽃문화예술체험 특구조성 타당성조사용역	50,000	50,000	-	시비	사업 부적정
공원과	401-01(시설비)	근린공원 온열벤치 설치	50,000	5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401-01(시설비)	근린공원 수목전정	100,000	100,000	-	시비	사업시기 부적정
	401-01(시설비)	공원 내 수목이식	110,000	11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401-01(시설비)	특색있는 석산공원 조성	200,000	20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401-01(시설비)	나눔공원 조성	300,000	30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401-01(시설비)	소주동 작은공원 조성	1,800,000	1,770,000	30,000	시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후 사업시행
	401-01(시설비)	조형홍가시 전정	20,000	20,000	-	시비	사업시기 부적정
	401-01(시설비)	배롱나무 전정	20,000	20,000	-	시비	사업시기 부적정
	401-01(시설비)	지방도 69호선 가로수 전정	80,000	80,000	-	시비	사업시기 부적정
	401-01(시설비)	국도 35호선 해송전정	56,000	56,000	-	시비	사업시기 부적정
도로 시설과	401-01(시설비)	매곡마을 쉼터 조성	30,000	3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401-01(시설비)	북정도시계획도로 (소2-104호선)개설	20,000	2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401-01 (시설비)	교동도시계획도로 (중2-18호선)개설	60,000	6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에덴밸리 교통통제초소 운영	29,617	29,617	-	시비	사업 불필요



의원발의 조례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3월 8일)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발의의원



정석사 의원



서진부 의원



김효진 의원



박일배 의원



임정섭 의원

제안이유

이 규칙은「양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규칙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내역 공개 등 (안 제3조 ~ 안 제6조)
- 다. 정보공개 및 부당사용자의 제재 등 (안 제7조 ~ 안 9조)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의결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3월 8일)

양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의원



이정호 의원



문신우 의원



김태우 의원



최선호 의원



곽종포 의원



김혜림 의원



박미해 의원



정숙남의원

제안이유

- 가. 1947년부터 추진되어온 농촌청소년운동으로 농촌근대화에 크게 기여해 온 4에이치(4-H)운동을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나. 4에이치 이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각종 청소년문제 해결과, 농업후계인력 육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4에이치 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4에이치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라. 보조금지원에 대한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3월 8일)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문신우 의원



박일배 의원



임정섭 의원



이용식 의원



김태우 의원



최선호 의원



박재우 의원



이장호 의원



박미해 의원

■ 제안이유

- 가. 제117회 임시회에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조례 개정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나. 조례 개정 후 주거지역 내 많은 제조업소가 들어오게 되어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음
- 다. 이에 주거지역내 제조업소 난립을 막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제공하고자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제외하고자함

■ 주요내용

제1종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 제조업소 건축을 제한
(안 별표 3 ~ 별표 5의 각 가목 개정)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수정의결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단서 삭제〉 나.~차. (생 략)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단서 삭제〉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단서 삭제〉 나.~차.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를 말한다)에서 반경 200m 이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개 정 안	수 정 안
나.~하. (생 략)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단서 삭제>	나.~하. (현행과 같음)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를 말한다)에서 반경 200m 이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나.~하. (생 략)	나.~하. (생 략)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의회의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의원



박일배 의원



김효진 의원



이중희 의원



김태우 의원



이장호 의원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개정으로 지방의회 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코자 함.

주요내용

- 가. 공무국외여행 명칭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 나.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방법개정
 -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인 2/3이상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민간인 중 호선
- 다. 제8조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 제출을 30일전까지 제출로 변경
- 라.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기준 신설 등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의회의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박일배 의원



김효진 의원



이중희 의원



김태우 의원



이장호 의원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관련 조례 개정(표준안)'을 지방의회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코자 함.

주요내용

- 가. 제5조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및 검증절차 강화
- 나. 제7조 수익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 신설
- 다. 제8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 신설

라. 제9조 징계 기준 신설 등

-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박일배 의원



김효진 의원



이종희 의원



김태우 의원



이장호 의원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19.3.25.시행)으로 국민권의 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표준안)을 반영코자 함.

주요내용

- 가.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규정 신설
- 나. 제4조의 5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규정 신설
- 다. 제8조의 2 알선·청탁 등의 금지 규정 신설
- 라. 제32조 행동강령 교육 실시 신설 등

-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김효진 의원



박일배 의원



박재우 의원



이장호 의원



박미해 의원

제안이유

양산시 행정기구 중 기구 신설과 폐지, 명칭변경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행정기구 개편 내용
 - 국 단위 기구변경
 - 1) 신 설 : 경제재정국
 - 2) 명칭변경 : 경제환경국 → 환경녹지국, 행정국 → 행정지원국
 - 3) 직제순 변경

기 존	조 정
행정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환경녹지국
복지문화국	경제재정국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개발주택국
양방향노화산업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양방향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웅상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웅상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 과 단위 기구변경

- 1) 신 설 : 아동보육과(복지문화국), 동물보호과(농업기술센터), 지역재생과(개발주택국), 환경건축과(웅상출장소)
- 2) 폐 지 : 도시개발과(개발주택국)
- 3) 명칭변경 : 기획관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 소통담당관, 감사관 → 감사담당관, 행복교육과 → 평생교육담당관, 도시과 → 도시계획과, 건설과 → 건설하천과, 민원지적과 →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과 →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 4) 이 관 : 일자리경제과(경제환경국 → 경제재정국) 세무과, 징수과(행정국 → 경제재정국) 위생과(경제환경국 → 경제재정국) 평생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 → 담당관)

나.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안 제3조제2항)

현 행		개 정	
위원회	소관	위원회	소관
기획행정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총무과, 복지문화과), 양산시 설관리공단, 양산시복지재단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기획행정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경제재정국, 행정지원국, 웅상출장소(총무과, 복지문화과),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양산시설관리공단, 양산시복지재단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건설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양방향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웅상출장소(경제환경과, 도시건설과)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건설	환경복지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양방향노화산업국, 웅상출장소(경제교통과, 도시건설과, 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 발의의원



박재우 의원



정석자 의원



박미혜 의원

■ 제안이유

양산시의회 의원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시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연구를 통해 입법정책개발 및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구성(안 제3조)

-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
-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가능

다. 등록 및 해지(안 제4조)

-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연구단체 대표자가 의장에게 제출
- 등록받을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3개 이내
- 지원받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등 사유 발생 시 해지

라. 연구활동비(안 제5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
- 1개 연구단체에 해마다 500만원 초과할 수 없음

마. 해체(안 제9조)

- 의원연구단체 해체 신청서가 제출된 때
-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의원임기 만료된 때 자동 해체

바. 운영 심의위원회(안 제10조)

- 의장은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
- 의회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됨
- 의정팀장을 사무처리 간사로 됨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가능

■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발의의원



박미혜 의원



정석자 의원



최선호 의원



박재우 의원



김혜림 의원

제안이유

양산시의회 견학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들의 의정에 관심증가와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민주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의회 견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나. 의회 견학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다. 의회 견학의 신청과 견학일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라. 의회 견학에 따른 안내직원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5조)
- 마. 의회 견학의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발의의원



정숙남 의원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5조, 제6조)
- 다.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제8조)
- 라. 위원회 구성 등(안 제9조 ~ 제10조)
- 마. 포상(안 제11조)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발의의원



박미혜 의원



임정섭 의원



정석자 의원



이종희 의원



문신우 의원



최선호 의원



곽종포 의원



박재우 의원



김혜림 의원



정숙남 의원

제안이유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계획, 모니터링제도 및 관련 기관과의 상시협력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통학차량 운전자, 통학지도교사 및 보육교직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8조)
- 마. 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설치를 권장하는 사안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의원



정숙남 의원



김효진 의원

제안이유

향교 활성화를 위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시장의 역할 등(안 제3조, 제4조)
- 다. 사업비 지원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 등(안 제5조 ~ 9조)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박재우 의원



박미혜 의원

제안이유

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여 보호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보호·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유형유산 추가(안 제3조)
 -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곳
- 나.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 5조)
 - 구성인원 7인 → 8인으로 변경
 - 위원회 구성 자격 변경 및 추가
 - 양산지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학예사
 -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 양산시립박물관장
- 다. 보호문화유산 지정에 긴급 매입 부분 추가(안 제9조)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의원



박재우 의원

제안이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다. 시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라.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임기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 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사.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및 구매실적,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제19조)
- 아.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 제21조)
- 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제안이유

가로수 수종의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가로수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가로수 수종의 선정 기준 중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식재된 수종”이란 표현을 삭제함(안 제6조)
- 나. 가로수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1항)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의원



제안이유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의 통학로 주변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제6호)
- 나.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 제안이유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이용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 명시(안 제13조제1항)
- 나. 공공시설 지하 및 지상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명시(안 제13조제2항)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이장호 의원

■ 제안이유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빈집 및 빈집 정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빈집 정비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빈집 정비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년 4월 19일)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이용식 의원

■ 제안이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정비하여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표의 규정 내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호, 목을 붙이고 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의 표현을 알기 쉽도록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별표1])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9년 6월 24일)

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발의의원



이장호 의원

제안이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시책추진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사업자 및 사용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라.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3조)
- 마. 부문별 에너지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20조)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의결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생략)	제1조 (제정안과 같음)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6. “에너지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6. ----- -----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9년 6월 24일)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발의의원



최선호 의원



임정섭 의원



박재우 의원



박미혜 의원



김혜림 의원

제안이유

도시역사 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존, 활용함으로써 미래 유산을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공감대 형성, 참여를 증진하며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전담인력, 도시역사문화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마. 조사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바. 기록물의 생산, 실물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 사. 도시역사문화의 보존에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의결



제160회 임시회

■ 심의안건

1.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p.24
2. 양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p.24
3.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25
4.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양산시 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9.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6.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시립휴먼시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양산 대방노블랜드8차 로얄카운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양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용당터널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협약서 동의안
2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가. 양산복합문화타운의 준공 예정에 따라 효율적 관리와 전문 인력 배치로 시설 이용객들의 다양한 문화시설 제공 및 각종 편의 도모.
- 나. 시설관리공단의 신규위탁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 관리 및 운영 등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신규위탁사업 신설 및 사업명칭 변경(안 제19조)
 - 당초 :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 변경 : 양산문화예술회관 및 양산복합문화타운 관리 및 운영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체계정비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회의 역할, 기능 등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나. 위원회 구성(안 제11조)
- 다. 분과위원회 구성 등(제18조)
- 라. 지역회의(안 제19조)
- 마. 예산학교 운영 등(안 제24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책자형 시정 소식지 발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시정홍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발행 및 형식 추가(안 제2조)
(현 행) 반월보, 타블로이드판 발행
(개정안) 타블로이드판 발행 외 책자형 시정 소식지 추가
나. 간사 명칭 변경(안 제5조)
(현 행) 공보담당주사
(개정안) 시보 업무 담당팀장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수정의결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발행 및 형식) ① 양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문형과 잡지형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신문형 시보 : 타블로이드판, 월 2회 발행 2. 잡지형 시보 : 책자, 월 1회 발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2조(발행 및 형식) ① 양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문형과 잡지형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신문형 시보 : 타블로이드판, 월 2회 발행 2. 잡지형 시보 : 책자, 분기별 발행 ② (개정안과 같음)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시정홍보 공식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타지자체에서 실시하는 SNS 이벤트를 개최하고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SNS 서포터즈 운영시 콘텐츠를 제공한 서포터즈에게 원고료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서포터즈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SNS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소통강화를 위해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안 제6조제2항)
나. SNS 서포터즈 운영시 콘텐츠를 제공한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안 제7조제5항)
다. SNS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안 제8조제2항)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나. 양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자매도시 결연, 북한의 재해·재난·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지원.

■ 주요내용

- 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제6조)
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11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가.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을 추가하여 직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
나. 「20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 변경에 따라 단체보험 가입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외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가.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추가(안 제7조)
-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추가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2018.12.18.)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 및 특별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경우 삭제(제7조의2, 제8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3조제8항, 제23조제9항, 제26조, 제28조)
- 나. 배우자 출산 시 특별휴가 10일 부여(제23조제1항 별표 3)
-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5일 부여(제23조제1항 별표3)
- 라.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제23조제5항)
- 마. 군(현역)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을 포함하여 2일의 특별휴가부여(제23조제11항)
- 바. 자녀 돌봄 휴가 사용 사유 확대(제23조제12항)
- 사. 민원인의 위협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 부여(제23조제13항)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를 신설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 산하기관, 재위탁, 재계약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

자·출연기관

- 재위탁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적정성 검토 기준 :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 다. 의회 동의 및 동의 내용 구체화(안 제4조의3, 안 제4조의4)
 - 의회 동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청소·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등
 - 의회 동의안 내용 :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 시설, 위치도) 등
 - 라. 선정기준 등 사전공개, 선정결과와 공고 규정 마련(안 제5조제2항, 제4항)
 - 공개모집 원칙,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 공개
 - 마.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 등
 - 바.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 및 참여 비율 명시(안 제6조)
 - 외부위원의 자격요건 :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등
 - 외부위원 참여 비율 : 2분의 1 이상
 - 사.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해촉, 제척·기피·회피) 마련(안 제6조의2)
 - 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의 지원 신설(안 제7조, 안 제9조의2)
 - 자. 사후 성과평가 실시,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3조)
 - 차. 위탁 취소 사유 구체화(안 제13조의2)
 - 수탁기관이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등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수정의결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위탁사항의 변경,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양산시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의 3(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1. (개정안과 같음)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2.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000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3. (삭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물금신도시 조성완료, 사송 신도시 조성 등으로 향후 5년 내 인구 40만을 대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의 신설과 폐지, 명칭변경 및 부서 간 업무 조정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국 단위 기구변경

- 1) 신 설 : 경제재정국
- 2) 명칭변경 : 경제환경국 → 환경녹지국, 행정국 → 행정지원국
- 3) 직제순 변경

기 존	조 정
행정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환경녹지국
복지문화국	경제재정국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개발주택국
양방향노화산업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양방향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웅상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웅상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나. 과 단위 기구변경

- 1) 신 설 : 아동보육과(복지문화국), 동물보호과(농업기술센터), 지역재생과(개발주택국), 환경건축과(웅상출장소)
- 2) 폐 지 : 도시개발과(개발주택국)
- 3) 명칭변경 : 기획관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관 → 소통담당관, 감사관 → 감사담당관, 행복교육과 → 평생

교육담당관, 도시과 → 도시계획과, 건설과 → 건설하천과, 민원지적과 →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과 →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 4) 이 관 : 일자리경제과(경제환경국 → 경제재정국)
세무과, 징수과(행정국 → 경제재정국)
위생과(경제환경국 → 경제재정국)
평생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 → 담당관)

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분장(안 제5조)

- 1) 인구·출산,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 신설
- 2) 교육지원, 평생학습, 청소년 등에 관한 사무 평생교육담당관 이관

라.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분장(안 제6조)

- 1)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 관리, 고용·일자리 창출, 상·공업진흥 시책 추진, 에너지 및 연료 수급·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경제재정국 이관
- 3)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공단폐수처리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이관

마. 경제재정국 소관 사무분장(안 제7조)

-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 관리, 고용·일자리 창출, 상·공업진흥 시책 추진, 사회적 경제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및 연료 수급·관리, 지방세부과·징수·조정 및 국세위탁징수,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신설

바.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분장(안 제8조)

- 1) 물금신도시 조성 및 택지개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사업지원, 공기업관리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동면사송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 2) (지역,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주택국 이관

사. 개발주택국 소관 사무분장(안 제9조)

- 1) 도시재생, 농산어촌 기반 조성 및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 2) 택지개발(신도시조성),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사업지원, 공기업관리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동면사송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안전도시국 이관

아.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분장(안 제10조)

- 1) 지방세부과·징수·조정 및 국세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경제재정국 이관

자. 양방향노화산업국 소관 사무분장(안 제11조)

- 1)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보건소 이관

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분장(안 제20조)

- 1) 학교급식,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사항 신설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분장(안 제23조)

- 1) 공단 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물금신도시 조성완료, 사송 신도시 조성 등으로 향후 5년 내 인구 40만을 대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개편에 따라 총정원, 기법제처의 조례.

■ 주요내용

- 가. 총정원 조정 : 1,203명 → 1,333명(증 130명)(안 제2조)
 ※ 국·과 신설, 신규 행정수요 및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
 - 집행기관의 정원 : 1,179명 → 1,308명(증 129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4명 → 25명(증 1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1) 기관별 정원 조정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현행	1,203	629	24	87	108	118	47	75	115
개정안	1,333	692	25	96	132	131	52	80	125
증감	130	63	1	9	24	13	5	5	10

(2) 직급별 정원 조정

구분	계	일반직								전문경력관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정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1,203	1,170	1	12	63	279	328	297	189	1	1	10	21	1
개정안	1,333	1,298	1	13	66	295	348	355	219	1	2	11	21	1
증감	130	-	-	1	3	16	20	58	30	-	1	1	-	-

다. 소요비용 추계 : 인건비 37,224백만원(향후 5년간 추계)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현행 시세 감면 조례 적용기한이 2018.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요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21. 12. 31.까지 연장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기한 연장(6건)
 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2조)
 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 반영(안 제3조)
 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연장(안 제4조)
 마.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5조)
 바. 농공단지 대체임주자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7조)
 사.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9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양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양산시 고시 제 2019-6호)에 따라 고시된 해당지역에 대해, 「지방세법」제 112조 및 「양산시세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산시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고시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 312,975,446㎡

양산시 대상지역 (㎡)	합 계	312,975,446
	주거지역	28,753,208
	상업지역	2,915,759
	공업지역	14,721,954
적용제외지역	녹지지역	266,584,525
	관리지역(개발제한구역 등)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 양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양산시 고시 제2019-6호)
 ※ 양산시 전체 484.55km² 중 적용제외지역 171.57km²(개발제한구역 등) 이외지역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도시지역 : 312.98km²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감사원 “토석채취료 등” 관련 규정 개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정 권고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29조)

- **채광물의 매각대금**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산지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와 불일치 해소)

나.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건물대부로 산출기준 개정**(안 제30조)

- 건물 일부 대부 시 부지평가액 산출 방식 변경
- 건물 및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기준 변경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로 및 사용료 감경 사항 추가** 반영(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의 시설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의 시설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감경

라. 기타 사항(안 제3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문구, 법령제명 수정
-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 삭제에 따라 사문화된 조문 삭제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설·운영에 따른 월 50,000원 이내의 수강료 징수 근거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나.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 신설(안 제15조의3)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2014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자로 재 위탁 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시설현황

(단위 :㎡, 명)

시설명	소재지	보육실 면적	정원 (현원)	보육 교직원	비고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양산시 교향의봄5길 20	301	294	9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구분 : 변경위탁
- ※ 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 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위탁기간 : 5년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모집방법 : 공개경쟁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5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운영체의 공신력	10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 심사방법 :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시립휴먼시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2014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로 재 위탁 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립휴먼시아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시설현황

(단위 : ㎡, 명)

시설명	소재지	보육실 면적	정원 (현원)	보육 교직원	비고
시립휴먼시아 어린이집	양산시 양주로 58 주공7단지 관리동1층	157.439	31(29)	8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구분 : 변경위탁
- ※ 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 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

으로 선정하는 경우

- 위탁기간 : 5년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모집방법 : 공개경쟁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5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운영체의 공신력	10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 심사방법 :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 대방노블랜드8차 로얄카운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시설현황

(단위 : ㎡, 명)

소재지	어린이집 시설면적	예상정원	비고
양산시 물금읍 아리로 50 (양산대방노블랜드8차 로얄카운티 아파트)	199.150	약46	세대수 : 1,062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구분 : 신규위탁
- ※ 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 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위탁기간 및 예산 : 5년 / 리모델링비 등 150백만원(국도비지원)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5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운영체의 공신력	10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 심사방법 :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다. 향후계획

- '19. 2월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제출
- '19. 3월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협약서 체결
- '19. 4월 : 위탁운영자 선정 및 리모델링공사 시행
- '19. 5 ~ 6월 : 기자재구입 및 시립어린이집 인가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시설현황

(단위 : m², 명)

시설명	소재지	수탁자 (대표자)	면적	종사자 수	비고
양산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양산시 양주1길 7-1, 2층	양산외국인 노동자의 집 (김덕한)	287.14	9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구분 : 재위탁

※ 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 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위탁기간 : 3년
- 위탁내용 :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위탁방법 :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심사항목 및 배점(2019년 가족사업안내 지침)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사업수행기관 전문성	20
센터의 지리적 위치	20
사업수행기관 시설·역량	30
사업계획 적정성	20
법인·단체 지원능력	10
합 계	100

- 심사방법 : 양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축전의 순환버스 운행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양산시 축제 이용객에게 무료 순환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양산시 축제 이용객에 무료 순환버스 제공 근거 신설
(안 제9조의2)

나. 순환버스의 제공주체, 방법, 시기, 노선 등 기술
(안 제9조의2)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가. 2004년 6월 조례개정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가구당 용자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 후, 지난 14년간
용자한도 조정이 없었음
- 나. 변화하는 물가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구당 용자한도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자한도 조정(단체 1억원 이하, 가구당 5천만원 이하 한도를 단
체, 가구 구분 없이 1억원 이하로 통일)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
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나. 지원사업의 종류 및 예산지원(안 제5조 ~ 제6조)
- 다.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안 제8조 ~ 제12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용당터널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협약서 동의안

■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의거 예산 의
무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체결 사항에 대하여 양산시의회의 의
결을 얻고자 함
- 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신설 국도7호선의 우리시
관내 부분개통 예정('19. 4월)에 따라 우리시 관리 터널(서
창,덕계)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 터널(용당,두명,화정,
진하,서생)을 국토교통부의 『국도터널 통합관리망 구축계
획』에 따라 터널통합관리를 위한 운영 및 관리비 부담 등을
위한 협약을 위해 협약동의안을 제안함.

■ 주요내용

- 가. 협약대상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 나. 협약목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신설국도(7호선, 31호
선)의 터널통합관리를 위해 공사 준공(부분개통 포함) 후 터
널내부 상시감시 및 제어 등 사고발생 30분내 신속한 현장조
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하여, 용당터널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터널관리시행
- 다. 협약 대상 터널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국도명	터널명	터널연장(m)			관리 청	행정 구역
		계	양산시	진영국도		
계	7개소	10,439	3,732(35.8%)	6,707(64.2%)		
국도7 호선	용당터널	1,010		1,010(울산방향)	진영 국도	양산시 울주군
		1,000		1,000(부산방향)		
	서창터널	1,225	1,225(울산방향)		양산 시	양산시
		1,164	1,164(부산방향)			
	덕계터널	709	709(울산방향)		양산 시	양산시
		634	634(부산방향)			
국도31 호선 (기장~ 울산)	두명터널	750		750(울산방향)	진영 국도	양산시 기장군
		755		755(부산방향)		
	화정터널	280		280(울산방향)	진영 국도	울주군
		247		247(부산방향)		
	진하터널	535		535(울산방향)	진영 국도	울주군
		640		640(부산방향)		
	서생터널	750		750(울산방향)	진영 국도	울주군
		740		740(부산방향)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가. 동면 민원사무소 신축 : 회계과

- 동면 민원사무소는 현재 석산 신도시 내 지상1층, 연면적 226㎡(68평)규모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주민들의 자치 프로그램 및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청사 확충을 요구하고 있음.
- 현 동면 민원사무소를 철거하고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800㎡ 규모로 신축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가칭)독립공원 조성 : 주민생활지원과

- 양산지역 항일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기리고자 교동 306번지 일대에 연면적 1,025㎡ 지하2층/지상1층 규모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가칭)독립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다.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 사회복지과

- 상하북 지역은 노인 인구수 4,924명, 노인 인구 비율 21.6%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나 복지관이 전무하여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반인들의 복지·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라.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변경) : 체육지원과

- 당초 양산시 주남동 산72번지 일원 공유지9필지(A=12,468㎡)상에 웅상 야구장 건립을 계획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의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치 타당성 검토요청 의견에 따라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음.
- 타당성 용역 결과 웅상체육공원 내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마. 양산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건립 : 출)복지문화과

- 웅상 지역내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던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한군데로 모으고 미디어 센터를 확대 이전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이고 수준높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웅상 지역 문화·교육 분야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재지	구분	사유	재산규모	기준가격(천원)	비고
계	취득		토지 : 4필지 4,297㎡ 건물 : 4동 9,100㎡ 기타 : 1식 17,916㎡	202,791 27,701,000 1,920,000	
1	취득	동면 민원사무소 신축	건물 : 1동(1,800㎡)	5,000,000	
2	취득	(가칭)독립공원 조성	토지 : 1필지(4,102㎡) 건물 : 1동(1,025㎡)	166,131 6,000,000	
3	취득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토지 : 3필지(195㎡) 건물 : 1동(2,810㎡)	36,660 7,251,000	
4	취득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변경)	기타 : 1식(17,916㎡)	1,920,000	
5	취득	양산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건립	건물 : 1동(3,465㎡)	9,450,000	

■ 소관위원회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 심사결과 수정의결

연번	건명	심사결과	수정안
1	동면 민원사무소 신축	불승인	○ 장기적 관점의 재검토 필요 (두 번의 증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급증을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신축을 기하여 신축할 필요성이 있음)
2	(가칭)독립공원 조성		
3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변경)		
5	양산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건립		



제161회 임시회

■ 심의안건

1.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p.26
2.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26
3.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27
4.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27
5.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p.28
6. 양산시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p.29
7.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p.29
8. 양산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 p.30
9.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p.30
10. 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31
11.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p.31
12.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32
13.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32
14.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32
15. 양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 p.33
16.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33
17.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교체공사 지원대상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신설(안 제40조의2)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162회 정례회

■ 심의안건

1. 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 p.34
2.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 p.34
3.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35
4.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생활SOC(체육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11.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양산시 시민장(市民葬)등에 관한 조례안
16.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18. 양산시 주민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양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4.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가. 향노화 힐링 서비스 체험관 “숲에서”의 준공예정에 따라 효율적 관리와 전문인력 배치로 이용객들에게 건강증진 서비스 및 편의 제공
- 나.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신규위탁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 등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신규위탁사업 “숲에서”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19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간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었던 행정서비스 기준 및 법령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장애인등급”을 “장애정도”로 정비(안 제2조)
- 나. “1급 ~ 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안 제3조~제9조)
- 다. “4급 ~ 6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정비(안 제3조)
- 라. “시각장애인 4급”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비(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시행 2019.3.27)에 따른 업무

기관으로 의료급여기금 회계공무원의 임용사항을 정비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기관으로 의료급여 기금 회계공무원의 임용 정비(안 제3조)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 제7조의2)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보험료 하한액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기준 금액 변경(안 제2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관련 용어 정비와 휠체어택시 면제 기준을 통일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안 제7조)
나. 장애 유형별 등급에 따른 복잡한 면제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전 체적인 지원대상 확대와 민원의 혼돈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추구(안 별표 2)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의 비만율도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법 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1 ~ 3급 장애인”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안 제9조의6 및 제27조)
나.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볼링장에 노인 및 청소년 이용료를 세분화하여 신설(안 별표 5)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생활SOC(체육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 제안이유

- 가. 국립대학 내 생활SOC 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생 교육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 그간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내 쓰레기 불법투기, 무성한 잡초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 유휴부지 미개발로 인한 날림먼지로 시민들의 고통 호소 및 다수 민원 제기
나. 사업부지 인근 물금택지 및 신도시가 조성되어 44,300세대 13만 인원이 거주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체육증진을 위한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다. 양산캠퍼스는 '09년부터 의생명분야 대학(의·치의·한의·간호)이 이전하여 교육·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전무
라. 양산에는 학생(2,206명)과 교직원(230명)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규격화 된 체육시설이 없어 교양수업이나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주요내용

- 가. 규 모 : 연면적 8,500㎡(지상 4층, 지하1층)
나. 사업기간 : 2020년~2022년
다. 주 용 도 : 교육기본시설(체육시설)

라. 총사업비 : 33,17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식	금액(천원)	비고
기본설계비	$1,242,177\text{천원} \times 50\% \times 1.1225 = 697,172\text{천원}$	697,000	
실시설계비	$1,242,177\text{천원} \times 50\% \times 1.1225 = 697,172\text{천원}$	697,000	
시설비	$8,500\text{㎡} \times 3,047\text{천원} = 25,899,500\text{천원}$	31,400,000	
	$2,000\text{㎡} \times 1,000\text{천원} = 2,000,000\text{천원}$		지반보강
	$28,000\text{㎡} \times 125\text{천원} = 3,500,000\text{천원}$		운동장조성
감리비	$31,399,500\text{천원} \times 0.9837\% = 308,877\text{천원}$	309,000	
부대비	$31,399,500\text{천원} \times 0.23\% = 72,219\text{천원}$	72,000	
부지매입비		-	
기본설계비		33,175,000	

마. Space Program

(단위 : ㎡)

전체 사업규모						학생이용		주민이용	
규모 (A+C)	사업비					규모 (A)	사업비 (교육부) (B)	규모 (C)	사업비 (지자체*) (D)
	교육부	지자체	타부처	기타	계 (B+D)				
8,500	29,375	3,800			33,175	6,520	29,375	1,980	3,800

■ 사업비 확보 및 운영관리

가. 우리시 신청 생활SOC[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사업 선정 될 경우

(단위 : 백만원)

건물명	시설명	착수	종료	연면적 (㎡)	건축비	국비	지방비	부지매입비	총사업비
부산대 (양산 캠퍼스) 체육 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일반형)	20	22	1,200	3,800	3,000	800		33,175
	부산대 (양산캠퍼스) 체육시설	20	22	7,300	29,375	29,375	0	없음 (부산대 부지)	
	소계			8,500	33,175	33,175	800		

나. 선정 불가시 우리시 예산 시비 3,800백만원 대응 투자

(단위 : 백만원)

실명	합계		학생이용		주민이용	
	실수(B)	면적 (C=A*B)	실수(B)	면적 (C=A*B)	실수(B)	면적 (C=A*B)
투기실	1	240	1	240		
무용실	1	240	1	240		
다목적구장	1	660	1	660		
휘트니스센터	1	600	1	600		
락가룸	4	240	4	240		
샤워실(탈의실)	4	240	4	240		
체육관	1	1,600	1	1,600		
관리실	1	30	1	30		
지도자실	2	60	2	60		
기구창고	2	60	2	60		

(단위 : ㎡)

실명	합계		학생이용		주민이용	
	실수(B)	면적 (C=A*B)	실수(B)	면적 (C=A*B)	실수(B)	면적 (C=A*B)
수영장	1	1,200			1	1,200
순면적 합계		5,170		3,970		1,200
공유 면적		3,330		2,550		780
합계		8,500		6,520		1,980

다. 사업준공 후 우리시에서 수영장 시설 운영 및 관리 계획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사랑상품권의 연간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양산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상품권 연간 할인구매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 (안 제10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범죄환경 개선등 역할과 임무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이 공감하는 범죄예방 환경 구축 및 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환경 개선등 자율방범대 임무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신설(안 제5조의2)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가. 물금읍 신기·가촌마을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마을을 분리하고 적합한 마을명을 부여하고자 함.
- 나. 동면 석산금오마을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마을을 분리하고 적합한 마을명을 부여하고자 함.
- 다. 삼성동 마을명칭(행정동)이 기존 자연마을명칭과 유사하여 지역주민들이 마을명 구별이 어렵고, 주민들이 마을명을 잘 알지 못하여 아파트와 연계된 실질적인 마을명칭으로 변경, 신기4마을은 어감이 좋지 않아 마을위치와 관련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주요내용

- 가. 물금읍 이통 명칭·정수, 관할구역 조정
- 명칭 : 물금읍 가촌리 신기 ⇒ 신기, 수자인
가촌 ⇒ 가촌, 동화
 - 정수 : 물금읍 60개 마을 ⇒ 62개 마을(가촌리 20개 ⇒ 22개)
- 나. 동면 이통 명칭·정수, 관할구역 조정
- 명칭 : 동면 석산리 석산금오 ⇒ 석산금오, 금호어울림
 - 정수 : 동면 29개 마을 ⇒ 30개 마을(석산리 15개 ⇒ 16개)
- 다. 삼성동 이통 명칭 변경(6개마을)
- 명칭 : 신기동 신기3마을 ⇒ 신기해강 마을
신기동 신기4마을 ⇒ 동신기 마을
북정동 중북정마을 ⇒ 북정동원 마을
북정동 동북정마을 ⇒ 북정대동1 마을
북정동 신하북정마을 ⇒ 북정대동2 마을
북정동 신상북정마을 ⇒ 대동빌라트 마을
- 라. 관할구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읍면 동별	법정리· 동의 명칭	정 수	관할구역 (행정리·동)	읍면 동별	법정리· 동의 명칭	정 수	관할구역 (행정리·동)
물금 읍	가촌리	20	신기, 대방메가시티1, 대방메가시티2, 거북, 이지누리, 이지더원2, 빛솔, 대방새실, 가촌, 중산우성, 동원비스타4, 양우내안애2푸른, 양우3센트럴, 힐데스하임, 대방연리지, 연리지, 백호, 동일숲속, 양우숲속, 청룡	물금 읍	가촌리	22	신기, <u>수자인</u> , 대방메가시티1, 대방메가시티2, 거북, 이지누리, 이지더원2, 빛솔, 대방새실, 가촌, <u>동화</u> , 중산우성, 동원비스타4, 양우내안애2푸른, 양우3센트럴, 힐데스하임, 대방연리지, 연리지, 백호, 동일숲속, 양우숲속, 청룡

현 행				개 정 안			
읍면 동별	법정리· 동의 명칭	정 수	관할구역 (행정리·동)	읍면 동별	법정리· 동의 명칭	정 수	관할구역 (행정리·동)
동면	석산리	15	계석, 극동, 대정, 석산, 석산금오, 석산양우6, 석산이지, 반도강변, 반도아이비6, 이편한, 이편한강변, 석산동원 누리, 해강, 석산일동, 석산한신	동면	석산리	16	계석, 극동, 대정, 석산, 석산금오, <u>금호어울림</u> , 석산양우6, 석산이지, 반도강변, 반도아이비6, 이편한, 이편한강변, 석산동원누리, 해강, 석산일동, 석산한신
삼성 동	신기동	9	상신기, 신기2, 신기3, 신기4, 중동, 서중동, 강이, 동중동, 서동	삼성 동	신기동	9	상신기, 신기2, <u>신기해강</u> , <u>동신기</u> , 중동, 서중동, 강이, 동중동, 서동
	북정동	10	하북정, 북정양지, 서북정, 신하북정, 중북정, 상북정, 신상북정, 동북정, 신북정, 새롭		북정동	10	하북정, 북정양지, 서북정, <u>북정대동2</u> , <u>북정동원</u> , 상북정, <u>대동빌라트</u> , <u>북정대동1</u> , 신북정, 새롭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 사무 및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책임성을 높이고 민원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신규 위임사무
- 1) 출장소장 위임
 - 아동보육과 : 다함께 돌봄센터(초동, 마을) 지원 및 관리
 - 자원순환과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승인관련 협의 외 1
 - 도로관리과 : 시투법 및 급경사지 관련 시설물점검
 - 교 통 과 : 불법구조변경차량 지도단속 외 2
-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 1) 출장소장 위임
 - 행복교육과 ⇒ 평생교육담당관, 도시과 ⇒ 도시계획과, 건설과 ⇒ 건설하천과, 민원지적과 ⇒ 토지정보과
 - 2) 읍·면·동장 위임
 - 민원지적과 ⇒ 소통담당관, 도시과 ⇒ 도시계획과
- 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 1) 출장소장 위임
 - 기초생활보장업무(지정기탁금품 접수 및 처리)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아동복지업무(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 외 7) :
사회복지과 ⇒ 아동보육과
- 보육업무(어린이집 설치, 폐지, 인가 외 7) :
여성가족과 ⇒ 아동보육과
- 도시개발업무(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증
명발급 외 2) : 도시개발과 ⇒ 도시계획과
- 도로유지 관리업무(접도구역관리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
분) : 도로시설과 ⇒ 도로관리과
- 도로시설물에 관한 업무(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
수) : 도로시설과 ⇒ 도로관리과
-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의 권한 : 건설과 ⇒ 지역재생과
- 축산에 관한 업무(축산업의 등록) : 농업기술과 ⇒ 동물보호과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 업무(영업신고, 변경
신고 외 5) : 농정과 ⇒ 동물보호과
- 농약관리법에 관한 업무(농약판매업 등록, 취소 외 2) :
농정과 ⇒ 농업기술과
- 비료관리법에 관한 업무(비료 생산업·수입업 등록 외 2) :
농정과 ⇒ 농업기술과
- 2) 읍·면·동장 위임
 -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통합사례관리사업 외 1) :
주민생활지원과 ⇒ 여성가족과
- 라. 위임사무 변경
 - 1) 읍·면·동장 위임
 - 상수도시설에 관한 업무 : 급수폐전 신고 ⇒ 급수장치 폐
전·중지 신고
- 마.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순 정비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시민장(市民葬)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의로운 행동을 하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민장(市民葬) 범위 : 장의 의식 중 영결식 집행과 분향소 운영 (안 제2조)
- 나. 시민장(市民葬) 대상자(안 제4조)
 - 1) 국내·외에 큰 업적을 남겨 양산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
 - 2) 지역경제, 문화예술, 체육, 지방행정,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양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 3) 재난·범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양산시민
- 다. 시민장(市民葬) 대상자 결정 :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의 제청이 나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시민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안 제5조)
- 라. 시민장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시장)포함 15명 이내(안 제6조)
 - 1) 양산시의회 의원 2 명
 - 2) 양산경찰서장
 - 3)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4) 양산문화원장
 - 5)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마. 장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시장)포함 30명 이내(안 제10조)
 - 1) 양산시의회 의원, 양산시 소재 관공서공무원, 고인의 유가족 이 추천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
- 바. 장의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장법 및 건전가정의례준 칙 준용(안 제13조)
- 사. 분향소 : 공공장소에 설치·운영(안 제15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예비군법등 법령 개정사항 및 조직개편에 의한 국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예비군법 개정 용어 변경(제2조)
- 나.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제3조)
- 다. 조직개편 부서 명칭 변경(제8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시 청사 및 소속 행정기관 등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차장 운영시간 규정(안 제3조)
- 나. 주차요금 징수규정(안 제4조)
- 다. 주차요금 면제 및 감경 규정(안 제5조, 제6조)
- 라. 주차시간 산정방법 및 결제방법 규정마련(안 제7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 증가와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의 비만율도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양산주민편익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이용료를 세분화하여 규정(안 별표6)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산림청에서 국민들이 자연휴양림 예약 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한 예약 정책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검토를 마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자연휴양림과 생태숲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 이용요금처리 방법 등의 관리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생태숲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연휴양림과 생태숲을 산림복지시설로 통합
- 나.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운영, 요금 징수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조 ~ 5조, 제9조 ~ 제11조)
- 다. 이용료 감면, 위약금, 환불정책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 제8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수정의결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이용 신청) ① (생 략)	제10조(이용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까지 시설 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단, 이용일 당일 예약의 경우에는 입실 또는 사용 전까지 시설이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 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 ----- ----- ----- -----.

양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양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국가 주요 정책인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자문 기능 추가와 자문단 정원을 증원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함.

■ 주요내용

- 가. 국가 중요 정책인 국가안전대진단 기능 추가(안 제2조)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
- 다. 자문단 정원 증원(안 제3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수소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지 경관지구 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시설 허용(안 제36조)
- 나. 학교부지 내 기숙사 설치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용적률 법정 최대한도까지 완화(안 제60조)
- 다.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제한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주거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 제한(안 별표 4, 별표 5)
- 라. 수소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시설 허용(안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21)
- 마.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안 58조,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12, 별표18, 별표20, 별표22)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나. 단계별집행계획(세부사항은 별첨 조서 참조)

구분	개소	사업량 (㎡)	총사업비 (백만원)	투자계획 (백만원)						20.7. 실효 사실
				1단계			2단계			
							2-1단계		2-2단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총계	997	18,497,953	3,169,051	98,557	211,239	100,719	173,155	37,521	2,547,860	720
도로	871	7,338,674	2,267,412	56,386	156,571	61,029	155,608	7,577	1,830,241	667
주차 장	23	29,112	21,163	4,955	241	4,000	-	-	11,967	1
자동차 정류 장	1	38,044	19,800	8,100	11,700	-	-	-	-	-
광장	13	173,716	32,897	2,024	850	-	-	-	30,023	2
공원	43	3,768,136	85,193	9,291	16,074	4,910	1,700	-	53,218	31
녹지	15	1,000,413	281,698	2,229	11,603	11,603	10,447	6,908	238,908	12
유원 지	1	847,530	117,396	-	-	-	-	-	117,396	1
공공 공지	2	5,936	4,536	-	-	-	-	4,536	-	-
학교	5	80,503	98,881	-	-	-	-	-	98,881	3
공공 청사	2	13,647	40,100	-	-	-	1,600	18,500	20,000	1
문화 시설	2	38,843	26,549	10,950	7,900	7,699	-	-	-	-
체육 시설	1	4,586	9,000	1,022	2,000	5,978	-	-	-	-
하천	18	5,158,813	164,426	3,600	4,300	5,500	3,800	-	147,226	2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채택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문 내용을 표준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안 제2조)
-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안 제3조 ~ 제5조)
- 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행 (안 제8조 및 제10조)
- 라. 이용대상자 사전 심사 및 이용 기간(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이용요금 및 운행 지역 (안 제16조 ~ 제18조)
- 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및 위탁(안 제19조 ~ 제23조)
- 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안 제24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수정의결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생략)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생략)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1. 특별교통수단 등 -----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등 -----
3.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 등 -----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6. 특별교통수단 등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시 중앙동 일원의 연약지반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에 따라 토지굴착공사로 지반의 붕괴 등 우려가 있는 건축계획일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고 원활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확대(안 제8조제1항)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중인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 협약 만료기간(2019.11.30.)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적	주요시설	비고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377	38,016㎡	판매장, 집배송장 등	현 운영자 (주)서원유통

나. 위탁구분 : 위탁

다. 위탁기간 : 5년

라. 위탁내용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전반

마. 모집방법 : 공개모집

바. 신청자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사. 심사방법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상위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및 시설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별지 제1호 ~ 제6호, 제9호)
 - 폐수종말 → 공공폐수
- 다. 법령 용어 정비(안 별지 제8조 ~ 제11조, 제21조)
 - 폐수관거 → 폐수관로
- 라. 시설사용료 부과를 위한 오염농도의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2)
 - 현행 : 연9회(3회/4개월) 채수 후 익년도 요금부과자료 활용
 - 개정(안) : 월1회 이상 채수 후 익월 요금부과자료 활용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상위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및 시설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 어곡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별지 제1호 ~ 제6호, 제9호)
 - 폐수종말 → 공공폐수
- 다. 법령 용어 정비(안 별지 제8조 ~ 제11조, 제13조, 제21조)
 - 폐수관거 → 폐수관로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상위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조 ~ 제7조)
 -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5분 자유발언

양산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방도 1022호선 확장 제안

제160회 임시회
곽종포 의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종포 의원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과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부터 한발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 발전과 변화하는 교통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도 1022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여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고, 양산 동서부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도로망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양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민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예산 투입하는 2개의 도로개설 사업이 원활한 교통 소통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까? 안타깝지만 본 의원은 그러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지방도 1022호선 중 토교에서 물금까지 기 개설되어있는 부분은 여전히 편도 1차선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할 것이며, 협

소한 도로로 인해 인근 주민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에서 5억원의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기한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용역을 6~7월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도내 지방도에 대한 개설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제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용역입니다. 최근 양산 웅상~상북 지방도 1028호선이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우선순위로 포함되어 개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처럼 토교에서 물금까지 개설되어 있는 지방도 1022호선 확장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는 원동면 개발만을 위해 제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금신도시의 접근성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것이며, 이는 곧 타 지역에서 물금신도시로의 접근성을 높여 양산부산대 유희부지 개발사업을 촉진시킬 것이며, 결과적으로 양산시의 성장동력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그동안 소외되었고, 검토 중단 되었던 지방도 1022호선의 확장을 위해 경남도에서 시행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제160회 임시회
최선희 의원



동면 석·금산신도시 중학교 신설요구

반갑습니다. 양산시민 여러분! 동면·양주동 시의원 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애쓰시는 모습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동면 석·금산신도시 중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학교 신설문제는 분명 시장님을 대표하는 집행부만의 결정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양산시장이며, 양산시장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내 모든 사안에 대하여 결정하고 협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시민이 겪는 모든 불편사항과 억울한 일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때로는 온정을 담은 행정으로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동면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신도시 및 택지 진·출입로, 빗 공해, 악취, 경로당, 하천제방, 남양산IC 협소, 학교 문제입니다. 동면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사안으로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들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동면 신도시 주민은 물론 양산시민 모두 더 큰 변화를 느낄 것이며, 더 행복한 양산에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석산초등학교는 관내 37개 초등학교 중 학급수와 학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저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부모, 그리고 교육지원청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인재들이 동면 석산신도시에서 배출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지역의 교육환경을 생각하면 저와 지역주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환경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밀한 학급의 학생 수, 초등학교를 제외하곤 교육인프라가 전무한 지역현실을 생각하면, 해맑게 등·하교하는 아이들에게 어른의 한 사람으로써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도시의 정주요건 중 일자리 확보와 함께 교육환경 조성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보다 나은 미래를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학교분포와 기형적 인구분포현황을 보시면, 동면 신도시 주민들의 중학교 설립요구가 원칙에 어긋나는 지역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동면 신도시 학부모들은 삶의 터전을 한 곳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할 시점이 되면, 부산이든 물금 신도시든 동면 신도시를 떠나야하는 실정입니다. 지금상태로는 도시가 안정화 될 수 없을 것이며, 도시의 젊은 활력이 줄어들 것이며, 도시는 사라질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산에 조성된 양주, 물금, 증산, 범어신도시처럼 동면 신도시주민들이 한 곳에 뿌리내려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제160회 임시회
이용식 의원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양산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 자원봉사는 제4의 물결로 인류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 됨은 물론, 자원봉사 활성화 여부에 따라 국가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기준 1365자원봉사포털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200만명이고 활동봉사자는 41%인 490만명입니다.

하지만 양산시에는 417개 단체에 80,367명이 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나, 활동봉사자는 27%인 22,054명에 그치고 있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양산시자원봉사센터는 과거의 역할과 기능에만 머물러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역시 저조하여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기구 설치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늘어나고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결정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자원봉사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에서 설치 의무를 두고 있는 정책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봉사의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

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상근 인력기준이 35만~50만명의 도시는 9명인데 비해, 양산시자원봉사센터는 전담공무원 1명을 포함해 3명에 불과해 센터운영 인력이 기준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김해시의 경우 2004년도에 자원봉사계를 두고 법인 설립 후 센터장 등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구 25만의 거제시는 국장을 포함하여 7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우리시자원봉사센터의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및 위탁 운영을 제안합니다. 양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7조를 살펴보면,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 시·도 직영인 자원봉사센터를 법인 또는 민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양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시장을 센터장으로 담당공무원 1명과 실무직원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엔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원 부족에 따른 창의적인 활동이나 새로운 도전과제를 추진하려는 직원들의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센터운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건물 건립을 촉구합니다.

현재 양산시 자원봉사센터는 1996년 건립한 조립식 건물로 20년이 넘도록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를 교육훈련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며, 봉사단체들의 회

의 및 상호 교류 공간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둡고 힘든 곳에서 활동하는 8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동참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자원봉사센터 건립과 운영형태 변경 그리고 인적 인프라를 구축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3·1절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보존하자

제160회 임시회
박재우 의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재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시 독립유공자분들의 정신을 보존하고 그 숭고한 뜻을 되새기기 위하여「기미독립선언문」을 읽고자 합니다.

〈 기미 독립 선언문 〉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써 자손만대에 일러 겨레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이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겨레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발로로 말미암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있는 지 여러 천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십년이 되도다.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 얼마며,
겨레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 얼마며,
겨레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일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풀어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애려면,
겨레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옹기 가꾸어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겨레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속의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며,
물려서 계획을 세우는 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할까!

병자수호조약 이후,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실생활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낼 뿐이요,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이 겨레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 하노라.

자기를 일깨우기에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여가를 갖지도 못하였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옛부터의 잘못을 따져 볼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넓은 사상과 넓은 세력에 얽매인
일본의 위정자의 공명심의 회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 겨레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는
마침내 억압으로 이뤄진 당장의 평안함과,
차별에서 오는 고르지 못함과
거짓된 통계수자 때문에, 이해가 서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량이 날이 갈수록 깊이 패이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 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울분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이천만 국민을,
힘으로 붙잡아 묶어둔다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동양의 평안함과 위대함을 좌우하는
사역 중국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움을
갈수록 짙어지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운을 초래할 것이 뻔한 터에,
오늘 우리의 조선독립은 조선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아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누나.

새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누나
얼음과 찬 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김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 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가 본시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겨레의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우리는 그래서 분발하는 바이라.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함께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누나.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일에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룩할 것이라.
다만 저 앞의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로다.

공약삼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겨레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달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가칭 ‘김복동 평화공원’ 설립 제안

제160회 임시회
박미해 의원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양산시민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미해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센터, 성가족상담소, 양산진보연합,
YWCA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故 김복동 할머니의 양산추
모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설운동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였
습니다.

1926년 양산 남부동에서 출생하여 1940년 일본군 위안부
로 끌려가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인권·평화운동가로 헌신하신
할머니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故 김복동 할머니의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어가고 기념하기 위한 추모공원,
가칭 “김복동평화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할머니는 1940년 만14세의 나이에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로 중국,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등지로 끌려 다녔습니다.

1947년 할머니 나이 21살에, 인간으로서 한평생 지을 수
없는 큰 상처를 가슴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국가가,
사회가, 우리가 침묵하고, 개인의 소중한 삶이 폭력의 역사
속에 묻히도록 방기하여, 할머니의 40년 삶은 가족과 주변인
들의 냉소를 묵묵히 참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좌절하지 않고, 1992년 세상
을 향해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치욕적인 삶을 살았노라
고 외치며 위안부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
와 제대로 된 배상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
지 않고, 무력분쟁 중에 만연하게 자행되는 성폭력 문제를 해
결코자 노력하는 평화의 나비가 되어,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
로 나가 학생들과 시민들을 만나서 모두가 평화롭게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외치셨습니다.

평화를 향한 끝없는 노력과 헌신은 무력분쟁지역 아이들에
게 장학금 지급,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나비기금설
립, 전 재산을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에서
도 선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인권상 국민훈장 수상, 여성인권상 수상으
로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해 조금이나마 인정받기도 하였습니
다.

이렇듯 할머니의 인생은 그 자체가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
자 지난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소중한 가르침이기에, 본
의원은 할머니를 기리고 그 뜻을 이어나가기 위한 추모공원
설립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 “김복
동평화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모공원 설립에 본 의
원뿐만 아니라 양산시가 함께 능동적으로 앞장서 주신다면
추모공원 설립은 조속히 실현될 것입니다.

추모공원이 실현된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할머니께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 우리 양산이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것이며, 민주시민

으로서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과거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다시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만 합니다. 故 김복동 할머니가 행동으로 보여주신 삶과, 인

권·평화의 소중함을 추모공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공모사업 당선을 위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의지 요구

제160회 임시회
이종희 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더 행복한 도시 양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시의원 이종희입니다.

지난 2월 27일 대한축구협회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
립부지선정 공모에 신청한 후보지 24개의 지자체 중 1차로
12개 지자체를 발표했습니다.

축구종합센터는 33만㎡ 규모의 부지에 실외는 소형 스타디
움, 축구장 12면, 풋살장 4면, 테니스장, 족구장, 실내는 다목
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수영장, 축구과학센터, 교육시설로
는 컨벤션센터, 세미나실, 강의실, 사우나실, 300명 규모의
숙소와 200여명이 근무할 사무동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파주 축구 국가대표 훈련원의 규모 및 시설
에는 한계가 있고 대한민국 축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IFA
랭킹 10위를 목표로 하는 축구트레이닝센터의 필요로 옮기
게 됩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총
1,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3년 축구종합센터가

완공되면 10년간 생산유발 효과 2조 8,000억 원, 부가가치
가 1조 4,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4만 명 등 지역경제와
문화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님!

이렇게 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전에서 우리 양산은
탈락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양산시가 너무 준비없이 제
안서를 냈고, 꼭 이루어야겠다는 간절함이 없는 것이 탈락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2018년 10월에 부지 선정 공고를 하고 2019년 1월 7일부
터 1월 11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양
산시는 1월 10일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총 33개의 세부항목을 검토하고, 공
정성 시비가 없도록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철저히 객관적으
로 평가해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지역의 안배나 정치적 요소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선정된 12개 지자체가 바로 인천시, 김포시, 여주
시, 용인시, 천안시, 상주시, 예천군, 군산시, 장수군, 세종특
별자치시, 인근의 경주시와 울산광역시입니다.

1차로 선정된 지자체를 보면 제안서를 넣기 위해 준비도 일
찍 시작하였고, 제안서에 운동장 조형도까지 준비하였습니

다. 각 지자체의 결의대회도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장수 1월 15일, 경주 1월 16일, 예천 1월 8일, 천안 1월 7일, 울산 1월 4일, 군산 1월 15일, 이천 1월 7일, 여주 2월 13일, 세종 1월 13일, 상주 2월 11일, 예천 18년 12월 31일)

그러나 우리 양산시는 어떻습니까. 지난 2월 21일에서야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골인점에 도달할 때에 우리는 그제야 출발점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보다 재정자립도나 위치, 환경 등 조건이 좋지 않은 곳도 선정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월 21일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한다기에 며칠 안 있으면 발표하는데 이제서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치 결의 대회장에서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말하려고 했지만, 언론사도 참석하였고 혹 반대한다는 모습을 보여 줄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행사에 시민과 단체에서 200여명이 모였습니다.

본 의원은 센터가 유치되면 양산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상·하복에 인구가 줄고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질문을 안 하길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님!

공모사업에 임할 때에는 간절함과 철저한 준비가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예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위원장들도 농촌개발 공모사업에서 5억, 10억 사업에 당선되기 위해 최소 2~3개월 전부터 마을 주민들과 연구하고, 또 발표장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 앞에서 수없이 연습도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양산시는 공모사업의 성공방법도 연구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정말 해야겠다는 우리시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시가 타 지역선수들이 오고 싶어 하는 전지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증산역 공영주차장 및 택시 승강장 설치 건의

제160회 임시회
정숙남 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물금신도시의 가장 중심역이라 할 수 있는 증산역에 공영 주차장과 택시 승강장 설치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하철은 도심과 도심을, 그리고 인근 도시를 연결하여 빠르고 정확한 시간에,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점과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건설하려고 합니다.

우리시도 1999년 호포역 개통이후 10여년만인 2008년 양산역 개통을 시작으로 남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 그리고 2015년 증산역이 개통되어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지하철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차장,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산역과 남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에는 지하철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택시 승강장도 역사 바로 앞과 맞은편에 각각 설치되어 이용에 편리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산역은 어떻습니까?

증산역 인근에 임시 공영주차장 2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 곳은 화물주차장으로 일반 승객들의 이용이 쉽지 않으며, 나머지 한 곳은 역과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역 주차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택시 승강장도 증산역 입구나 맞은 편 대로가 아닌 대형쇼핑몰과 상가 사이의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젊은 세대가 가장 많고 상가 밀집 지역인 증산역의 이용객은 2019년 1월 말 기준, 하루 평균 승차 4,409명, 하차 4,434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영주차장도, 택시 승강장도 역과 가까이 있지 않아 불편함이 클 뿐만 아니라,

증산역 주변과 맞은편 택지, 상가주변은 극심한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증산역 맞은 편의 대형쇼핑몰이 다음 달 문을 열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유입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세권이라는 호재로 입주한 시민들과 상인들이 이러한 주차문제로 오히려 피해를 입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 요구한 “향후 증산역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 지난 2월 교통과에서는 향후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국비 확보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의 시행 시기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묻고 싶으며, 주차장 설치 검토 시 택시 승강장 설치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하철 운영주체인 부산교통공사와 LH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대책을 강구하여 본 의원이 건의한 공영주차장과 택시 승강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 후 불편과 민원이 발생되어 어렵게 대책을 강구하기 이전에 계획단계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노포~북정) 구간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지하철을 포함한 교통인프라가 완벽한 양산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양산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제안

제160회 임시회
김효진 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입니다.

본 의원은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경남도내 9개 시군 대기오염 측정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창원시와 우리시가 $45\mu\text{g}/\text{m}^3$ 로 가장 높았고,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도내에서 우리시가 $22\mu\text{g}/\text{m}^3$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연일 계속되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가운데서 시민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아이, 학생,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의 대처가 어려워 심각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민들은 긴급재난문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앱마다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여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대기오염 측정망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리하는 중앙동행복복지센터와 웅상노인복지회관, 단 2곳에 불과하며 측정된 수치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치 또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멀리서도 한 눈에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양산타워에 LED 조명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LED 조명으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등 색상으로 공기질을 표시하여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서울 남산의 N서울타워를 들 수 있는데, 타워를 보는 것만으로도 서울시의 공기질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타워는 매일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미세먼지와 관련 서울시의 공기질 정보를 서울타워 조명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타워 조명색을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매우나쁨'은 빨간색, '나쁨'은 노란색, '보통'은 초록색, '좋음'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산타워에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조명으로 표시된다면 시민들이 공기질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타워 또한 최신 LED기술을 장착하여 양산시 대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납니다. 양산타워의 LED조명을 통해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외출 전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건강을 위한 양산시의 빠른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제160회 임시회
정석자 의원



신도시 열 송수관 안전관리 철저와 교체를 제안하며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자 의원입니다.

겨우내 잠자던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지난 겨울 단단히 얼었던 땅도 새봄과 함께 녹아들고 있는 해빙기에 즈음하여 저는 오늘 신도시 열 송수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송수관 매설 공법의 교체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열 송수관 파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0여명이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시 목동에서는 지하에 매설해 둔 난방 송수관이 터져 17시간 동안 1,8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난방수와 온수를 공급받지 못해 추위에 떨어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고양시 백석역의 사고 배관은 1991년에 온수예열 공법으로 매설된 것으로 연결구간 용접부 덮개부위의 용접 불량으로 원인이 되어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으며, 서울시 목동의 지하 난방 송수관 역시 같은 공법으로서 1985년에 매설되어 35년 가까이 지난 노후 관로였습니다.

우리시의 지역난방은 지난 1995년 사업허가가 난 이후 경동도시가스로부터 사업 승계를 받아 1999년에 열 공급을 개시 하였고 이후 공급세대를 점차 확대하여 2018년 12월 현재 48,293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매설된 열 송수관은 사고가 난 고양시에 비해 관로매설 시기가 10년 이상 차이가 나고, 보다 우수한 개선공

법을 적용하여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22일자 경기일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양시 백석역 사고의 주원인은 연결구간 덮개 부위의 용접불량이었습니다.

1991년 최초 공사 당시 덮개 부위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지난 27년 동안 내부변동압력 등의 영향을 받아 열 배관 조각이 배관에서 분리 되어 그런 참담한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주목할 단어는 “내부변동압력”입니다. 즉 열 송수관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지난 27년의 세월동안 꾸준히 내부변동압력에 노출되어 뒤틀리고 용접한 부분이 벌어져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열 송수관이 부식으로 인해 노후화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고양시 백석역 사고나 서울시 목동과 같은 열 송수관이 파열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온수예열 공법의 열 송수관 매설은 앞서 언급한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공법으로 차수막과 온수 등을 유출하기 위해 주기적 재용접이 필요한 공법입니다.

신도시에 온수예열 공법으로 매설한 열 송수관은 최소 15년 이상 된 노후화된 관이므로 부식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장기간에 걸친 내부변동압력으로 인해 열 송수관 파열의 우려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점으로 인해 온수예열 공법은 2003년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기예열 공법은 전기저항을 이용하여 배관을 예열하는 방식으로 온수 유출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용접 또

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온수예열 공법으로 매설한 열 수송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더 안전한 전기예열 공법의 열 수송관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도시는 2003년 이전에 온수예열 공법으로 매설한 열 수송관이 14개소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8개소는 안전한 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상복구 조치하였고, 4개소는 고양시와 같은 공법인 것으로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3월부터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후 열 수송관에 대한 보수공사도 중요하지만 이것 역시

용접에 의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담보한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온수예열 공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6개소에 대하여 사고 발생 우려한 큰 것부터 시급히 교체를 하고, 남은 곳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열 수송관이 전기예열 공법으로 교체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양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원도심 지반침하에 대한 적극적 행정 촉구

제161회 임시회
이용식 의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할 것을 촉구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기본적인 욕구인 생활공간의 안전을 위협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는 하루 빨리 지반 침하의 원인 규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반침하 현상은 2~3개월 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 5곳, 초등학교 1곳, 상가건물 6곳, 시 공공청사와 주차장 4곳, 35호 국도와 간선도로 등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합니다.

지난해 5월에는 지하터파기 공사 중인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 주변 건물에서 균열과 지반침하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공사 현장은 현재도 피압수의 용출로 하루 200~300톤의 물을 외부로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번 지반침하 현상은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압밀침하’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밀침하는 지하수위의 변화, 응력의 변화, 진동 등의 원인으로 토립자가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북부동 소재(양산종합운동장 위치) 지하 수위관측망 측정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 평균 2.75m의 지하수위를 일관되게 유지하다가 12월 5.77m, 올해 4월 11.67m로 불과 5개월 만에 평균대비 9m 나 떨어졌습니다.

관리부서에서는 한번쯤 지하수위 데이터 변화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거나 타 부서와 업무 공유를 통한 소통이 있었다면, 연약지반 침하에 대한 대응이 빨랐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행정적 대응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반침하로 인한 민원 발생 지역과 균열이 발생한 일부 건물의 개별조사만 진행하는 소극적 행정을 펼치다, 언론기사 및 공중파 방송에서 지반침하 문제를 연이어 보도하자 지난 9일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선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약지반으로 예상되는 전 지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 지하수 개발 제한입니다.

양산시 일원은 단층지역으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층 변화 우려가 있습니다. 물금 신도시 역시 지층 변화를 우려하여 지하수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듯이, 원도심도 현 시점에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규모 개발 허가 시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수립 선행 강화입니다.

과거 저습지인 논을 1977년 지반개량공사 없이 단순 성토만으로 조성한 현재 원도심의 지반은 연약할 수밖에 없으며, 연이은 대규모 공사 시행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개발 허가 전 지반침하를 예방할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등 전반적인 대책 수립 선행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지반침하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지역은 오래된 공동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안전에 대한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반침하로 인해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지역을 통합

한 단일 재개발 추진을 시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원도심 지반침하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어찌면 예견된 일인지 모릅니다. 문제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따지기 보단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원도심의 안전한 개발을 위한 방향과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원도심의 지반침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인 파악과 대책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양산의 3·1운동, 소중히 기억하기 위한 노력

제161회 임시회
이종희 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더 행복한 도시 양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시의원 이종희입니다.

지난 3월 한 달은 너무도 흥분되고 기쁜 날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랑할 수 있는 내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 새삼 감사했습니다. 100년 전인 1919년 3·1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 야망에 빼앗긴 우리나라를 되찾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3·1절은 100주년이다 보니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시의적절하게 국가에서도 독립운동을 한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대한독립선언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도 그 뜻을 기념하여 「양산 3·1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했습니다.

행사의 일환으로 3월 8일 통도아트센터에서 3·1만세운동 100주년 학술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약 3시간에 걸친 학술 발표는 참가하신 세 분의 토론자와 발표자분께서 당시의 역사에 대해 심도있게 준비하신 덕분에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학술발표에 참석하셨던 윤영석 국회의원,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것을 보고 양산의 독립운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서 당시 만세운동에 대해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3월 9일 하북 신평에서는 양산시민과 하북면민이 참석하여 줄다리기, 시극공연, 대북 퍼포먼스, 태극기 손도장 퍼포먼

스 등의 행사와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신평시장을 행진한 후 33개의 단체가 종합운동장까지 밀지를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재현행사에 참석했던 시민들의 모습에서 100년 전 3·1운동을 하였던 선조들의 잃었던 조국에 대한 비장한 마음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3·1운동 재현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양산시립박물관에서 「1919 양산으로 부터의 올림」이란 주제로 3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기획전에는 윤현진 독립운동가 외 네 분에 대한 역사자료와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일권 시장님!

양산의 이러한 3·1절 행사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자료 중에 KBS 3·1운동 100주년 특집으로 만들어진 만세지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년 전 우리 동네 만세운동을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양산시를 검색하면 4건의 시위내용이 나옵니다. 3월 27일 양산군 양산장터, 3월 29일 신평장터, 4월 1일 하서면 석계장터(현재 상북면), 4월 1일 양산군 현병 분전소에서 독립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느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평시장 3월 13일 만세운동의 경우도 줄다리기를 하면서 만세운동을 했다는 설과 장날 불을 지펴 만세 운동을 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산시에서 학술용역을 통해 양산의 3·1 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문헌, 개인자료 등 기록의 확인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통해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대한 확인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의병장 서병희, 임시정부 재무차장을 지낸 윤현진, 2·8 독립선언의 주역인 김철수 등 독립운동을 하였던 분들에 대한 더 많은 역사 자료도 수집해야 합니다. 또

한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있는지 찾아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더 많은 역사적 사실이 수집 되었을 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양산항일독립기념관 건립이 더욱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양산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민 피해 최소화 요구

제161회 임시회
최선희 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토지 보상 문제로 지지부진한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민 피해 최소화를 요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 주민은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적 재산권이 제한되어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의생명 특화단지, 양방향노화 산업 거점지로 양산시가 추진 하고자하여, 자신이 살아온 터전인 집과 땅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믿고 따라온 주민들이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경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지가 상승으로 인해 감정가가 높게 나와 전체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남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타당성 심사를 다시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주민보상도 몇 개월 이상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이사할 집과 대토할 농지 등을 계획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위 사업에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의 고충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주민들을 만나면 불확실한 진행과정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는 언제 완료되어, 언제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 정상화는 되는 것인지, 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향후 본인의 삶의 방향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관심과 궁금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시와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사업 진행정보를 알리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주민들과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투자타당성 재검토 및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자세히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어딘지 모르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 불안한 주민들에게 행정이 그들의 빛이 되어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산시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자신의 터전을 내어 준 주민들을 따뜻한 행정으로 어루만질 때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섭섭함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양산시는 경남개발공사의 투자타당성 재검토 및 투자심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며,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좋은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다세대·다가구 주택 생활쓰레기 수거 방안 개선

제161회 임시회
문신우 의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신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에 앞서 최근 신문에 보도되고 연이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지반침하 현상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특히 먹거리와 거주 공간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원도심 지반침하 현상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위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 활동과 관련 부서장과의 회의를 통해 원도심 침하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

였고, 또한 남양산역 주변 등 대형공사장 주변에 안전 펜스망 설치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는 공사 중단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터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른 대처와 대책 수립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살기 좋은 동네, 범위를 좀 더 넓혀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시는 인구 35만의 중견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양산시로 이주해 온 시민들은 도로, 공원, 깨끗한 거리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장점으로 꼽으며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 역시 “더없이 편안한 안전건강도시”를 추구하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삶의 질 저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

다.

신도시 조성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구성되어 있어 단지 내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며,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분리수거함이나 생활쓰레기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종량제 봉투 등에 담아 문 앞에 두면 수거해 가는 ‘문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를 길고양이가 찢어 건물 주변과 도로변이 엉망이 되기 일쑤이며, 수거를 위해 둔 종량제 쓰레기봉투 주변에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들이 쌓여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주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사는 주민들은 제때 수거되지 않거나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쾌적한 삶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요즘같이 날이 따뜻해지면 쓰레기 악취로 창문을 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따뜻한 날씨 푸른 하늘을 보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악취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2014년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용 승인 시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2014년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다가구 주택에는 여전히 생활폐기물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이전에 지어진 20세대 이하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전체 2,260동 중 1,302동으로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동, 삼성동의 경우 전체 18%인 319동이 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쓰레기로 인하여 악취 등의 고통을 상대적으로 더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2014년 이전 지어진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생활폐기물보관함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봉투째로 거리에 방치되어 있기 보단 보관함에 밀폐 보관하면 길고양이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무단 투기를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동네 수거함’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7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동네 거점에 마을단위로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재활용 동네마당’을 17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도 보관할 수 있는 ‘우리동네 수거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 거점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버리고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마을 공동 수거함을 설치한다면 거리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전제는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동네는 특별한 건 없다고 봅니다. 거리가 깨끗하고 인근엔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원이 자리 잡고 이웃끼리 대화가 오고가는 아늑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거리의 청결은 살기 좋은 동네의 전제이자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동네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동네가 쾌적한 진정한 ‘살기 좋은 도시 양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장애인 전용 파크 골프장 설치 요구

제162회 정례회
박일배 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 시정방침처럼 함께
행복한 더 큰 양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애인 전용
파크 골프장 설치를 요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4월말 기준으로 인구가 약 35만에 중견도시를 넘
어 자족도시로 순항하고 있는 양산호에 함께 하고 계시는 장
애인 들이 양산시 전체 인구에 4.6%인 약 1만 6천명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양산호의 일원이며 같이 가야할 시민이지만
이 분들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같은 사람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인으
로 살아가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장애인의 숫자가 적기 때
문에 장애인을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
지 않는 것과 대다수의 비장애인 구성원들이 장애는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선천적인 이
유가 아닌 질환, 사고 등 후천적 이유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
가 86%나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장애인들 대부분이 후천
적으로 장애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비장애인 구

성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작은 것에서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변화가 양산에서 시작되기를 희망하며 “장애인 전용
파크 골프장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양산시 황산
공원에 18홀 2개, 가산 수변공원에 9홀 2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지만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뒤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따라올 경우에
는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마음의 불편함을 안고 게임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운동을 하며 힐링하러 왔다 마음에 명만 들고 가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양산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장애인
전용 파크 골프장을 가산수변공원에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
히 촉구합니다.

양산시는 외적 성장을 꾸준히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내적
성장에 신경을 써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행복
한 사회가 잘 사는 사회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
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한
사람이 좀 더 행복한 통 큰 양산을 기대해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에 어울리는 일
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162회 정례회
최선희 의원



법기수원지 일대 관광지 조성 로드맵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희입니다.

저는 오늘 법기수원지를 중심으로한 법기마을이 양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 하고자 합니다.

법기수원지는 1932년 부산의 일부지역에 식수 공급을 위하여 건설되었습니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위치는 양산시에, 소유권은 부산시에 놓인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1년 일부 개방된 법기수원지는 편백나무 숲을 비롯한 금단의 자연이 만든 비경을 가진 곳으로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는 휴식처입니다.

그러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법기수원지 내부는 오래된 편백나무 군락지 등 청정의 자연이 고스란히 간직된 아름다운 숲입니다. 이 곳이 개방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관리주체가 부산광역시에 있다 보니 미개방된 법기수원지의 관리 상태는 심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내부 소하천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며, 오래된 편백나무는 자연재해로 인해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으며,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이 소중한 숲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김일권 시장님께서도 법기수원지의 전면 개방과 법기도요지 복원 사업 등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법기수원지의 전면 개방을 이끌어내고, 관리권을 양산시에서 확보하여 도심 속에 지친 시민들이 편히 쉬어 갈 수 있도록 법기수원지를 양산의 아름다운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은 법기수원지 일대의 발전과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기수원지 일대는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에 대비한 도시계획 정비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재 양산시에서는 법기마을 일원 정비사업과 사적 제100호 법기 도요지 복원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법기수원지 일대를 수원지만을 방문하는 단면적인 관광지로 두기보다는 제대로 된 기반시설과 새로운 콘텐츠를 통하여 양산의 대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관광지는 결국 관광객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법기수원지 일대가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힐링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산시에서 체계적인 로드맵을 그려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162회 정례회
박미해 의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언

사랑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양산시민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큰 행복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미해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면, 그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힘들어집니다.

현재 우리 양산시는 미세먼지로 인해 이러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공장, 가정 등에서 사용된 화학연료가 연소하면서 배출되어 호흡과정에서 인체 내에 유입되는 유해한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생활하기 좋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에 따라 미세먼지에는 아주 취약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알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제가 고민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민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 양산시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도시 숲 조성 사업 등 9개 부서에서 24개 사업에 총사업비 62억원을 책정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시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정책이 실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사업으로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시민단체를 모집하고 연구, 토론, 발표,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홍보하고 시민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러한 공감대를 통해서 시민 참여형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아파트 주민, 경로당 어르신,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범시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전거, 이륜차, 차량에 깃발을 다는 등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농자재 및 생활주변쓰레기 불법소각금지 캠페인을 할 때 산불위험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발생함을 알리는 등 시민들이 함께 저감 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며 성과도 더 많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질 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컨트롤 타

위」를 설치하고, 일회성과 회피성 사업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 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 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제조업 연소에 따른 공단 오염과 자동차도로 매연, 신도시조성과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한 대규모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철저히 관리해야만 합니다.

사업장, 도로, 건설공사현장, 숲가마, 소각시설인 폐기물재활용 시설과 그 밖의 많은 미세먼지 발생장소를 요인별로 분석해서 원인 요인 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에 맞는 저감 정책들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또한 「통합컨트롤 타워」의 주도하에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연도별, 점차적으로 실행하고 그에 따른 성과결과를 다음 계획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으며, 그 밖에 다양한 고민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더 나아가 시민 여러분들께 서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제162회 정례회
정석자 의원



양주동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도시 1단계 지역인 양주동의 주거, 상권, 안전을 위한 송전탑 및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젊음의 거리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전탑 지중화 사업입니다.

총선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단골 공약으로 거론되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양주동 신도시는 20년을 맞고 있습니다.

역세권, 상권, 사통팔달 교통권에 관공서와 인접하며, 전통시장 등 도보로 모두 가능한 최상의 주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신도시임에도 학교와 주거 공간 가까이 송전탑을 끼고 있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택지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여도 우선 전신주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얹친 데 덮친 격으로 도시철도와 지하철 2호선의 연결 공사로 인하여 주거 및 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은 양주동 주민들은 한숨만 깊어 갑니다. 거기다 분양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점포점용택지 비중을 높이면서 야기된 주차문제는 현재까지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산시의 최초 신도시인 양주동의 현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사송신도시의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는 주민 안전과 건강권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고, 사송신도시 내에 공급되는 배전시설 역시 지중화 되기 때문에 신도시 전체에는 전봇대가 전혀 없는 쾌적한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가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 조성된 양주동 신도시의 지중화 사업에도 적극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2009년 11월 출범하기 전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정치권과 협의하였던 신도시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지금이라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 없는 거리에 지정된 젊음의 거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입니다.

“도로 포장 다시 한다고 다 ‘젊음의 거리’인가요?”

“불편한 시설, 공연 절차 부재... 끌리지 않는 젊음의 거리 무대”

2017년 1월 어느 신문기사의 메인 제목들입니다.

양주동 ‘젊음의 거리’는 2016년도 하반기에 10억여원의 사업비로 광장과 도로정비를 하게 되고,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서 ‘젊음의 거리’라 명명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구체적인 문화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아 2년여 동안 지역사회와 언론으로부터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2019년 당초예산에 거리공연 2천만원, 기획공연 2천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거리공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젊음의 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리공연 성공은 단순히 장소와 예산 등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연에 참여하는 버스커, 그리고 상인, 시민의 소통과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곳 젊음의 거리에는 건물주들을 주축으로 운영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샵’ 광장과 ‘스타’ 광장을 탄생 시켰으며, 활발한 거리문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 중부동 ‘젊음의 거리’ 북적북적”

“끼·열정 ‘뽀뽀’ ...양주동 젊음의 거리 ‘와글와글”

이제는 달라진 신문기사 메인 제목입니다.

이러한 젊음의 거리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산시에서는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정책)에 근거하여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거리공연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 육성·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거리 공연가들이 문화예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확보와 공연 조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쾌적한 도시조성, 더없이 편안한 안전건강도시, 생활이 즐거운 선진정주도시를 표방하는 양산시와 함께 양주동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162회 정례회
박일배 의원



공정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양산시의 적극적 행정 요구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기본 욕구 의·식·주 중 아직까지 소득 양극화로 인해 마련하기 힘든 주거 공간인 “공동주택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양산시가 적극적 행정으로 개입”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의 존립을 위해서는 시민이 가장 먼저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시민의 75% 정도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기본 욕구인 주거생활을 안정되게 영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시민들은 불안할 것이며 주민갈등이 야기되는 등 양산시 존립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의 주거생활 공간인 아파트는 전 재산이나 다른 없는 중요 자산임에도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양산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입주민인 시민들입니다.

아파트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정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양산시가 적극적 행정을 펼쳐 감시·감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힘겹게 번 돈입니다. 이런 소중한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특정업체에 ‘묻지마 견적’을 받아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

지만 견제수단이 없어 각종 비리가 수면위로 올라오기 전에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는 것이 공정한 공동주택관리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자율 운영이라는 취지를 살리되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행정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특별자문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공동주택특별자문단’이 전문성 결여 및 불합리한 관리로 인한 각종 비리 및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한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공동주택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 질 것이며, 이와 함께 “양산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한다면 입주민들 피해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산시는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급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에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여 풀아터졌을 때에 바로 잡으려 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공급한 공동주택의 관리가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감시·감독을 소홀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산시가 시민들을 보고 안아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언제든 양산시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162회 정례회
김혜림 의원



양산시 청년지원정책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청년 의원 김혜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최근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양산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난은 ‘취업 빙하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했다 라도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삶과 생계유지가 어려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구직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더 이상 취직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져 구직을 단념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청년 니트(NEET)’라고 합니다.

이미 잘 알고계신분도 많을 텐데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보통 15~34세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취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과는 다르며 이들은 사회적 배제로 인해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니트’ 비율은 보시는 자료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의 2배 수준인 2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경제불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청년니트’가 고령화된다면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되어 ‘은둔형 외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실업 감소, 즉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옆 지자체인 김해시에서는 인제대와 ‘글로벌 청년해외인턴’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최근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청년활동지원센터’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청년활동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청년기본조례’ 설치는 물론 청년지원정책의 실무를 논의하는 협의체인 ‘청년정책플랫폼’을 구성하여 청년지원정책의 공론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남부시장 청년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 청년관련 조례 제정 현황

경남 시부(8)

양산	창원	김해	진주	거제	밀양	통영	사천
X	0	0	0	0	0	0	X

경남 군부(10)

함안	의령	함양	거창	산청	합천	창녕	하동	고성	남해
X	X	X	0	0	0	X	0	0	0

이러한 사업을 뒷받침해줄 구심점이 없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가 없어 효과가 단발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남 청년과 관련한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우리 양산과 사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고 6개의 군에도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산시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팀’ 신설과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청년문제가 이미 사회적 이슈로 정착한 만큼 하루빨리 청년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팀을 구성하여 청년 고용 및 창업 지원은 물론 질 좋은 일자리의 근로환경까지 책임지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양산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등 전반적인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과거 노인, 청소년, 아동, 여성의 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행정조직이 생겨나 그로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지원정책에 눈길을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양산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언

제162회 정례회
이종희 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더 행복한 도시 양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시의원 이종희 입니다.

본 의원은 조현병 환자의 포용과 지원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인식개선 캠페인” 이무석 교수님의

영상을 보면,

“아, 병이라 그러는구나. 정신병이라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불치의 환자 취급해 버린다 말 이죠.

마치 상처가 났을 때 거즈로 덮어 주면 상처가 낫듯이

마음의 병은 위로를 받고 이해받고, 존중받을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without prejudice(편견 없이)

한 인간으로서 나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환자를 대하자.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은 격리가 아닌 관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체 국민의 1% 수준인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안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는 7만 7,000명에 불과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도 9만 2,000명에 그쳤습니다. 약 33만 명이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입원하지도 않고, 지역사회 보호망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양산시에 거주하는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자신과 세 살배기 아들, 예비신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역시 조현병 환자가 복용중인 약을 중단한 사례이며, 전문가들은 “복지부는 조현병 환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만 하고 안 오거나 약을 먹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환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경우 사회재활을 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양산시에는 대형 정신병원 6개와 정신요양원 1개 등 정신병상이 있고, 지역사회재활을 돕는 정신재활시설 2곳(벤엘 클럽하우스, 송인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 보건소가 있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시 관내 정신병원과 요양원이 많이 있어도 현행법상 입원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정부가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내년 중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으며, 또한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초기에 확충해 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조현병에 대해 일부에서는 환자 인권을 강조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지 “망상이나 환청에 시달리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인권이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인권과 공공의 안정성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우

리 모두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 또한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보호책임이 가족에게 있지만 이를 공공기관, 즉 국가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범죄율을 줄일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법원이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입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됐지만 양산시는 법 시행 3년차를 앞 둔 현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복귀 시 양산시의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건강과 고용·교육·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역계획의 수립

둘째. 정신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TF팀 구성

셋째.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정신건강센터의 인력확충과 정신 재활시설의 역할강화와 보건소, 병원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넷째.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위의 제안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초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 상황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질환자들을 환자나 범죄자로 여기지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배려를 하지 못한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김일권 시장님!

양산시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양산시는 인구대비해서 병원과 요양원의 정신병상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으므로 더욱 더 선구적으로 이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물금 광산 관광개발 재추진

제162회 정례회
곽종포 의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종포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역관광산업은 미래성장의 동력 원으로서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한 산업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있는 자원, 없는 자원을 모두 총동원하여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마찬가지로 관광자원 발굴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부권 문화관광의 마지막 퍼즐이자 관광자원으로써 활용될 잠재가가치가 있는 물금광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광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곳은 언양의 자수정 동굴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광명동굴을 손에 꼽을 수 있는데, 토지매입이 43억원, 시설비 200억원 총 24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 4월 4일 유료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500만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한해에만 112억 원의 세외수입 확보와 40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에 따른 지역경제에 창출된 부가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명동굴과 비교하여 우리 물금광산의 잠재자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은 규모가 총 8레벨, 7.8km 인 반면 물금광산은 총 9레벨 18km 정도로 규모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 측면에서 더 많은 관광테마를 조성할 수 있으며, 철기문화의 왕국인 가야의 철 생산지로도 학계에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더해진다면 역사적·교육적인 자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동굴이 단일 관광자원인 반면 물금광산은 황산문화체육공원과 원동매화 및 미나리축제, 원동자연휴양림, 그리고 배내골로 이어지는 양산 낙동강 관광벨트의 중추에 있으며, 영남지역의 유일한 스키장과, 세계 최장 루지가 있는 리조트, 에텐밸리와도 가까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모두 즐길거리가 있으며, 그 지역에 머물러 며칠 지낼 수 있는 숙박시설까지 갖춘 셈입니다.

사업비 확보와 사업 시기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점이 있습니다. 광명시가 국비 지원 없이 거의 전액인 241억 5천만원

을 투자하였는데, 규모가 큰 물금광산에는 더 많은 사업비가 들지만국비 확보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중앙 주도의 정책 및 사업계획으로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유사한 형태의 관광자원개발이 이루어짐을 한계로 여겨,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00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공모사업이 변모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만의 특수자원인 물금광산을 매력적으로 어필한다면 향후 국비를 확보하여 시비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물금광산의 관광자원 활용논의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

다. 집행부에서도 과거에 초기 검토가 일부 이루어져 있으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와 사업비 확보, 관광 상품성에 대한 고민에 주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이 미래성장의 핵심입니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정주여건 마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성장세가 차츰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 관광산업이 새로운 성장발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택경기 침체와 전반적인 경기 하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와 문화의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물금 광산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162회 정례회
문신우 의원



삼성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촉구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문신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성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가지 요소인 옷, 음식, 집을 의식주라 합니다. 이 3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집 즉, 주거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행위들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며 삶의 공간입니다.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재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거공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막공단이 인접한 삼성동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색, 취미생활 등으로 편안해야 할 집이 악취, 소음, 진동 등 환경 공해로 창문도 열지 못하는 스트레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현재의 삼성동 공사부지는 1999년도에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관리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2001년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폭 100m, 길이 600m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을 입안

토록 의견 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의 부서 간 소통 부재 및 안이한 대처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
다. 그 결과로 해당 공업지역에 여러 제조업체가 공장신설승
인 신청을 하였고 시에서는 뒤늦게 주민의 민원 및 환경 공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공장신설 불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신청업체의 행정소송에 2013년 2월 6일 양산시가 패
소하면서 현재의 공장 부지가 조성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완충녹지 없이 인접 주거지역 사는 주민들은 악
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현 상황에서 삼성동 악취 등 환경 공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양산와이어로프 부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
한 도시계획선과 같이 일부 매입하여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야 합니다.

이전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 비해 지가가 많이 상승하였습
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시 행정의 결과인 만큼 매입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악취에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 매
입하여 완충녹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정기 앞에 개설된 도로 일부를 폐도하여 차폐숲
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현재 일부 구간이 통행이 없는 도로로서 악취 유입 방지를
위해 폐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
목을 식재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셋째, 산막공단 중점 악취관리 업체의 현실적인 시설개선
과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일부 악취중점관리사업장은 악취 자발적 감축을 위하여 우
리시와 MOU를 체결하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측정 결과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일부 발생하는 등 시설개
선의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탈취제 투입, 흡착시설 설치, 미생물 투입 등 시설개선을 하
였으나 주기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행정의 지속
적인 지도·단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악취 농도

는 증가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시설개선 및 행
정의 지도·단속을 촉구합니다.

또한, 세 가지의 제안 외에 삼성동 악취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빠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이 원동면이든 물금읍이든 삼성동이든 본인의 거
주지에 따라 우리 모두가 향유해야 하는 환경의 쾌적성에서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
니다.

이런 현실이 비단 삼성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거지와
인접하여 대형 사업장이 조성되는 몇 곳에는 완충녹지 없이
환경 공해가 삶의 터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많은 녹지와
더 적은 밀도로서 삶의 터전을 바꾸어야 하며, 시민의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환경
공해 예방 및 저감지원 대책 등을 고민하고 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
력해가는 도시인 '건강도시 양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 제160회 임시회 김 호 진 의원

양산부산대학교 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에 대한 양산시의 추진 의지에 대하여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호진입니다.

오늘 제가 물금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지난 2017년 하반기 2020년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반영하여 캠퍼스 관통 도로 개설을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교육부와 부산대학교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는 지금의 물금로와 삼량로 사이의 도로로 양 측면의 일부가 개설되어 있으나 캠퍼스 안의 내부 도로일 뿐이어서 일반 주민들이 이 도로를 통해 범어 신도시와 증산 신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물금지구 토지이용계획은 최초 1994년 이후 8차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가 들어오기 직전인 2002년 토지이용계획도에는 양주 신도시와 물금신도시와의 연결도로가 2곳으로 계획되어 있어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토지이용계획도이며 이전 자료와는 달리 양주신도시와 물금신도시의 연결 도로가 1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는 1994년 최초의 토지이용계획 시부터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가 조성되어 2003년 토지이용계획에서 이 곳 중심상업지구가 현 증산역 앞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계획되어 있던 도로 개설은 취소되었습니다.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은 부산대학교의 일부 단과대학이 양산으로 이전한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당시 협의 되었던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이전은 무산된 지 오래고 양산시에서 몇 차례에 걸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서로간의 불협화음으로 20만평이 넘는 거대한 토지의 활용 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물금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되어 물금읍의 인구가 읍 단위로는 전국 최고인 12만 명에 달하고 있고 인구 증가 속도에 비례하여 차량의 통행량이 늘어 출퇴근 시간대에는 보는바와 같이 병목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메인 도로인 ‘청운로’ 외에 추가의 도로 개설로 차량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의 개설이 그 해답이 될 것임

니다.

우리시도 이를 인지하여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을 2020년 양산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산대학교의 반대로 인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물금읍민들의 숙원 사업인“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만약 추진의 의지가 있다면 “학습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관통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부산대학교와는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 답변 김일권 양산시장

먼저, 본 도로는 신도시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서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도로는 총연장 720m로서 2016년에 착수한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 및 부산대학교로부터 대학단지 단절에 따른 교육·연구 환경 저해, 안전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심의시 대학교 내 통과도로는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녹지가 단절되며, 부산대학교와 지역주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인근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하차도 설치, 입체도로 설치 등을 재검토 하라는 의견으로 유보되어 재정비(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다각적인 도로개설 방안을 검토한바, 전면 평면도로 개설, 일부 지하차도 개설, 전면 지하차도 개설 등 3개의 안을 마련하여 부산대학교측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평면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며,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지하차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면지하차도 개설은 (L=1,114m, B=20~40m) 1,400억원의 (공사비 : 920, 보상비 : 480) 사업비가 예상되고, 일부구간의 지하차도로 개설할 때도 (L=260m BOX-TYPE 22m, L=298m BOX-TYPE 60m) 750여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낮아 투자심사 통과와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하차도형 도로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가 평면 통과도로 개설시에도 과도한 보상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양산부산대 자체 내부 통과도로를 개설토록 유도하고, 개설된 통과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므로 자체 내부 통과도로 개설을 양산부산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효진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에서도 우리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관통도로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 평면도로 추정 사업비 : 약 490억원
(공사비 : 80억, 보상비 : 410억)



건의문

제160회 임시회(2019년 3월 8일)

국가지원지방도 제 60 호선 신기 교차로 지하차도 설치 건의문

발의의원



이용식



김효진



박일배



임정섭



이상정



이종희



문신우



김태우



최선호



곽종포



박재우



이장호



김혜림



정숙남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여 교통 혼잡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지원 지방도 제60호선(무안 ~ 부산) 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김해 매리 ~ 양산 구간이 2023년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이 양산시가지를 통과 하면서 일부 구간(구, 양산나들목 ~ 유산공단 앞)을 사업에서 제외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토록 하여 도로 사업 완료 시 시가지구간의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5년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 개통 대비 교통체증해소 대책수립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에서 제외된 시가지 노선 일부구간(L=0.9km)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포함하여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산공단 앞 일부(L=0.2km) 구간만 반영되고 신

기동 국도 제35호선 13번 교차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 차량의 시가지 통과 시 국도 제35호선 및 지방도 제60호선이 접하는 곳의 교통 정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여러 차례 문제 제기 및 해결 방안을 건의하였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에서 제외된 신기동 구간의 예견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통서비스 수준 FF등급인 국도 제35호선 13번 교차로인 신기사거리는 신도시 및 산단 조성으로 인한 인구 증가, 공단지역으로의 출·퇴근 차량증가, 국도 제35호선과 국지도 제60호선의 차량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지체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산업물동량의 수송시간 지체는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설계 완료된 양산도시철도 노선의 교각이 국도 제35호선 남북방향 중앙으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심각한 교통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문제 해결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 개설이 신기동 구간인 국도 제35호선 교차로를 사업구간에서 제외함으로써 교통 문제점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시민의 교통이용 편의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시민의 교통 편의와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신기동 구간을 국가 지원지방도 제60호선으로 지정하고 도로 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 정체를 해소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 계획 설계 시 교차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국도 제35호선 13번 교차로인 신기사거리에 지하차도 설치를 반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160회 임시회(2019년 3월 8일)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 공동촉구 건의문

발의의원



박일배 서진부 김효진 임정섭 정석자 이상정 이종희 이용식 문신우



김태우 최선호 곽종포 박재우 이장호 김혜림 박미혜 정숙남

양산시의회는 2018년 12월 21일(금)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KTX 중간역사 설치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에 건의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진행된 것은 전무하며 건의안은 공허한 메

아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금정구의회, 기장군의회와 공동으로 인근지역 150만의 염원인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를 재차 강력히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김해시 등

150만 명 이상의 이용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의 사저가 KTX 중간 역사 설치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KTX 중간 역사의 설치가 필요한 쪽으로 지역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가 지역의 뜨거운 관심사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KTX 경부선 등 현재 운행 중인 노선에 추가 역사 설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으며, 역사 설치에 대한 많은 요청이 있어 역사 설치를 원하는 지역에서 타당성 용역 등을 실시하여 요청을 하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환경 변화가 많이 발생하여 중간역사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타당성을 조사를 실시하여 공허한 메아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고속철 경부선 KTX의 경우 1일 최대 운행횟수 264회 중 122회로 46%이고, SRT의 경우 1일 운행횟수 120회 중 80회로 67%로 전체 KTX와 SRT 운행의 절반이상에 해당합니다.

KTX 중간역사 설치 지역인 금정구 노포동은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 총 51.7 km 거리 중 울산기점 27.5km 지점으로 부산역과 울산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경부고속도로 노포IC, 부산시 외버스터미널,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외곽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KTX 중간 역사 설치시 연계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추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고객, 교통인프라, KTX 운행횟수 등 모든 면에서 KTX 경부선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에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가 필요해 보이며, 이는 지역 이기주의를 주장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며, 국토의 지역 균형발전과 부·울·경이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KTX 중간역사 설치로 인해 고

속철의 완행화를 야기한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현재 KTX 총 5개노선 중 경부선의 운행횟수가 절반 이상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울산역에 정차하고 있어 울산역에 정차 하지 않는 KTX, SRT 열차를 노포에 설치될 중간역사에 정차하도록 하면 해결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금정구의회, 기장군의회와 공동으로 인근지역 150만의 염원인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차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지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노력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지역 국회 의원들은 150만원 염원인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에 동참 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인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듯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직접 나서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한국철도공사는 이용고객과 접점에 있는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에 150만 이용고객의 불편사항을 알려 노포 KTX 중간 역사 설치에 노력하라.



제161회 임시회(2019년 4월 19일)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관통도로 개설 촉구 건의문

발의의원



김효진



서진부



박일배



정석자



임정섭



이상정



이종희



이용식



문신우



김태우



최선호



곽종포



박재우



이장호



김혜림



박미해



정숙남

부산대학교는 2002년 6월,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 확보를 위하여 당시 양산물금신도시 중심상업 지구를 포함한 토지 34만평을 매입하였다. 이 토지는 과거 한국토지공사 양산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소유 주민들로부터 토지보상 및 성토 등으로 수용한 토지이며 부산대학교와 한국토지공사간의 매매 금액은 평당 15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현재, 병원단지와 그와 관련된 일부 대학단지만 조성되었으며 실버산학단지, 첨단산학단지 부지 등 20만평 이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당초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조성의 핵심 계획이었던 공과대학, 약학대학 이전의 약속은 부산대학교 앞 장전동 상인들의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부산대학교에서 파기하였고 그 부지가 황무지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비산먼지와 미개발로 인한 기회비용의 낭비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양산시민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부산대 양산캠퍼스 관통도로는 1994년 신도시 최

초 토지이용계획에서부터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 장소에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조성이 예상됨에 따라 2003년 토지이용계획에서 변경되어 취소되었다.

그 후, 양산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였고 2018년 12월 마침내 물금신도시에 계획되어 있던 공동주택 조성이 모두 완료되어 물금읍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양산신도시 동서를 잇는 중심도로가 부산대 양산캠퍼스를 관통하지 못함에 따라 12만 명의 물금읍민은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와 가까운 거리를 두고 가장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양산시민들은 지난 17년의 세월동안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가 조성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각종 개발 계획들의 무산으로 허탈감을 느꼈으며, 현재는 실버산학단지, 첨단산학단지 부지 방치로 인한 부산대 양산캠퍼스 관통

도로 미개설의 상태가 양산신도시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는 양산시민의 뜻에 따라 부산대학교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부산대학교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실버산학단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단지 조성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를 즉시 실시하여 양산시민의 염원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관통도로를 개설하라.

만약, 실버산학단지 조성 계획이 없다면 부산대 양산캠퍼스

관통 도로 개설을 양산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 당시 가격 그대로 양산시로 반환하라.

지난 10년 동안, 양산시를 통해 부산대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국·도·시비 등 약 677억 원이며 그 중 순수 시비는 약 100억 원에 달한다. 부산대학교는 이러한 예산 지원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실버산학단지 조성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양산시민의 숙원 사업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관통도로를 하루빨리 개설하기 바란다.

제162회 정례회(2019년 6월 24일)

“백농 이규홍” 선생 항일독립운동 서훈 요청 건의문

발의의원



김효진

서진부

박일배

정석자

임정섭

이상정

이종희

이용식

문신우



김태우

최선희

곽종포

박재우

이장호

김혜림

박미혜

정숙남

「1893년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에서 태어난 이규홍 선생은 1917년 부산에서 위장 무역업체인 일광상회 경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류하다

가 1919년 상해로 망명하여 같은 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청년단 출판 부장을 역임하였고 11월에는 임시정부 학무 차장을 지냈다. 1921년 3월부터는 의정원 의원으

로 활동하며 외무총장, 재무총장(1924~1925), 외무총장(1925)을 역임하였다.

이후, 1926년에는 국민대표기성회 위원이 되어 임시정부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고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에 올랐다.

또한 당시 국무령인 “김구”의 추천으로 국무원에 임명되어 임시정부 약한 기초의원으로서 활동 중 과로로 인해 병을 얻어 귀국하였고 1939년 5월 타계하였다.」

위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백농 이규홍” 선생의 항일독립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1930년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병이었던 결핵에 감염되어 고향에 돌아와 생계유지 차원에서 사업 명의를 대여한 것이 친일 성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일제 강점기에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을 논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파 명단에 오른 것도 아니고 이규홍 선생의 후손들이 확인한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도 “요시찰”인 물로만 남아있고 변절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독립운동에 관한 행적은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내용 뿐만 아니라 당시 이웃들의 증언, 1925년 2월 11일 동아일보에 본인께서 직접 기고한 연설문 등 수많은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손자분인 이경우(70)씨가 “백농 이규홍” 선생의 독립운동가 서훈을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보훈처의 냉담한 거절에 매번 낙담하고 있습니다.

일흔을 넘은 손자 분께서 생업을 제쳐 두고서 까지 조부의 항일 독립운동자료를 수집하는 이유가 이를 통해 본인의 경제적 혜택을 얻고자 함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손자 된 도리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조부의 명예를 조금이나 회복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는 부디 일제의 침탈에 결연히 항거했던 양산의 독립운동가 “백농 이규홍” 선생의 공적을 잘 헤아려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 시 긍정적

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양산시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양산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조사한 양산의 항일독립운동가 72명 중 윤현진 선생을 비롯한 31명은 항일독립운동 서훈을 받았으나 위에서 언급한 이규홍 선생 외 40명은 아직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적사항은 동봉한 자료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들도 함께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정례회(2019년 6월 24일)

양산시 동부 소방서(가칭) 신설 촉구 건의문

발의의원



이장호 서진부 김효진 박일배 정석자 임정섭 이상정 이종희 이용식



문신우 김태우 최선호 곽종포 박재우 김혜림 박미혜 정숙남

양산시의회는 대단위 신도시 조성과 함께 대규모 산단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산 동부지역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동면, 양주동 지역에 동부 소방서(가칭) 신설을 통해 동부지역 양산시민들에게 양질의 소방 및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도시 양산을 구현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 양산시에는 1개의 소방서 및 6곳의 119안전센터가 양산시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중 2곳의 119안전센터가 동부 양산의 웅상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 2곳의 119안전센터에 배치된 9대의 소방차 그리고 42명의 소방관들이 인구 10만 명의 소방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부양산은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2019년 연말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주진 흥등지구, 동면 사송 신도시 및 대규모 산단 조성 사업이 마무리 될 시점에는 엄청난 인구증가로 인한 소방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웅상 지역 내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2

천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수치는 도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6배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웅상 지역의 1년 평균 출동 횟수를 살펴보면, 화재 220건, 구조 1,443건, 구급 4,218건, 민생지원 96건으로 관내 다른 읍·면·동의 출동 횟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간단한 데이터만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소방인력 및 소방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동부 양산지역의 시민들은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4일 오전 발생한 웅상 공장 화재만 보더라도 119안전센터 소방관들이 신속한 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 및 장비로 인해 인근 공장으로 화재가 확대되어 주변 공장들이 전소하여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현장에 추가 인력 및 장비가 도착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부산 및 울산에서 지원 인력 및 장비가 도착했을 때는 벌써

골든타임을 놓쳐서 잔화 정리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9조는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 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역할은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은 물론 풍수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가칭 양산 동부 소방서를 신설하여 웅상

지역뿐만 아닌 동면, 양주동 동부지역 17만 여명의 모든 시민들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 및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산시의회는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소방본부와 함께 양산 동부소방서(가칭)가 하루 빨리 신설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상남도는 17만 여명의 양산 동부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양산 동부소방서(가칭)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162회 정례회(2019년 6월 24일)

웅상지역 송전선로 및 송전탑 도심구간의 지중화 추진 촉구 건의문

발의의원



박일배

서진부

김효진

정석자

임정섭

이상정

이종희

이용식

문신우



김태우

최선호

곽중포

박재우

이장호

김혜림

박미혜

정숙남

본 의회는 2018년 12월 21일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평산동지역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지중화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그 후 진행이 미진하여 건의안을 통해 재차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웅상지역은 15만 4천 볼트 1개 노선과 34만 5천 볼트의

2개 노선 총 3개의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 두 개가 주거밀집 지역을 지나 가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 재산을 위협하거나 침해하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20년 이상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 및 송전탑이 평산동 중심지를 지나고 있어,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나 안개가 많은 날에는 송전선로 및 송전탑 주변으로부터 ‘웅웅’거리는 울림소리와 ‘지지지’하는 소리를 들으며 전자파의 불안감으로 인해 기분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또한, 웅상지역 전체 15개 초·중·고등학교 중 7개인 약 47%가 두 개 송전선로 인근에 있으며, 심지어 대단위 아파트 지역인 평산동 한 아파트는 3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아이들이 머무는 평산동의 한 어린이집은 마당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전자파가 안전한가 불안정한가를 따지기에 앞서 주민들과 아이들이 고압선 인근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3월경에 “양산시 평산동 기설송전선로 지중화 경과지 검토”를 통해 지중화 비용 약 951억원의 경과지 최적안을 검토하였으며, 양산시가 지중화 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할 경우 한전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중화 공사 비용을 해당 지자체인 양산시에 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에서는 과다 비용 문제를 이유로 지중화에 구체적 계획을 세우길 주저하고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 도심 중심을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2개 노선이나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실 겁니까?

이제는 국회, 한국전력공사, 양산시가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웅상지역 송전선로 및 송전탑 도심

구간의 지중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원인자 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입법을 통한 원천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둘째. 한국전력공사는 법에 근거 없는 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에 넘길 것이 아니라 공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양산시는 입법으로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웅상지역 송전선로 및 송전탑 도심구간의 지중화 추진”에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한국전력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중화에 나서주길 요구한다.





2019년 상반기 민원처리현황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	처리결과
19.1.5.	수영장 시설이용에 관해서 불만입니다.	시설관리공단	-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스포츠센터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강좌의 수강 수요 증가로 대기인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새벽, 저녁시간대 수영 초급반 신규 수강에 대한 민원 및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운영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저녁 7시 자유수영 1레인(정원 15명) 운영에 있어 수영실력의 상이한 이용자들의 혼용으로 안전사고 및 이용 불편이 자주 야기 되었고, 저녁시간대 신규초급반 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많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해당시간대 자유수영 운영을 폐지하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레인여건, 재등록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1.14.	양산에서는 무상 교복 지원, 무상수학여행경비 지원을 왜 실시 하지 않나요?	행복교육과	- 교복 지원은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협약(2018.10.31.)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교복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 중학생, 2021년 중·고등학생으로 단계별 추진할 예정이며 - 수학여행비 지원은 양산교육지청 및 경남교육청 추진사업으로 2019년부터 초·중학생 지원, 2021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향후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사전 절차이행, 제반여건과 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9.1.7.	양산라피에스타상가 과대광고 및 사기분양 건	건축과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라피에스타 상가분양과 관련된 중도금·잔금의 납부관련, 대출한도, 임대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사업시행자인 라피에스타 측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1) 중도금 변제 및 잔금 납부기한 연장요구 - 중도금 대출기간 만기연장은 해당 금융기관의 결정사항으로 이미 1차례 연장(당초 2018.6.31. → 변경 2019.1.31.)된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출연장은 어렵고 이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연장도 힘듭니다. 2) 대출금액 한도 상향조정 요구 - 현재 잔금대출 금융기관에서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이 분양금액의 50~70%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시행사에서 각 층별 샘플세대 정식 담보감정평가 용역을 진행한 결과 분양금액의 약90%로 평가금액이 산출됨에 따라 각 잔금대출 금융기관에 대출한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3) 임대보증 이행 및 불이행시 임대보상 요청 - 현재까지 유치된 업종과 추가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을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 건물 외 실물을 약용한 낮은 수수료율 제시로 원만한 입점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낮은 수수료율은 소유권 이전 이후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간 체결한 '임대위탁동의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분양자의 동의를 구한 것이며 임대유치 보장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임대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양산시에서도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행사에게 적극적인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계약사항에 대한 부분,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사항 등 민사적인 부분은 행정기관인 양산시 강제성을 가지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양산시의회에서는 2019.1.28. 오전10시 양산시의회 부의장실에서 물금 지역 시의원 김효진, 곽종포, 김해림 의원이 해당 민원에 대한 양산시의 답변내용 검토 및 해결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민사적 사안에 대해 양산시의 행정지도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직접적 조치를 요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양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실을 통해 귀하께서 관련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양산시 공보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19.1.28.	교통 월드메르디앙 부실시공 고발 및 준공승인 연기요청	공동주택과	- 입주자 사전점검은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입주예정자의 편의와 시공에 대한 하자사항 등을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듣고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사항이며, 사용감사는 감리자의 최종 감리완료보고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구조물 안전에 대하여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한 구조물 안전진단보고서가 추가 제출되었으며, 우리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관리자단단이 현장 확인(1.30.)하였습니다. (현장 확인내용 불임) - 이를 참고하여 2019.1.31.(목) 사용검사확인증이 교부되었고,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신속·정확히 마무리 하여 입주자들의 불편과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 하였으며, 향후 계속해서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	처리결과
19.1.22.	석계2일반산업단지 관련 건의	투자유치과	1. 양산석계산업단지(주)의 법률 위반 관련 - 석계일반산업단지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양산분원의 이전 부지 등을 양산시에서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석계산단을 추진, 산단계획승인을 받았으나 2013년 6월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 타당성 미확보 결정을 받아 분원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시기상 즉각적으로 석계2산단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었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불가능 통보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두고 검토하던 중, 석계2산단이 2015년 1월 사업이 승인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 시기가 지연되면 석계산단의 통합개발이 불가능해지므로 불투명한 한국전기연구원의 분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협약에 따라 석계2산단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석계산단 통합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민원인과 가계약을 맺기 전 이미 양산석계산업단지(주)에서 통합개발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계약 전 양산시가 참여하고 있는 양산석계산업단지(주)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계약을 맺은 사항으로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약서상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므로 용적률 및 용지대금의 변경이 계약서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양산석계산업단지(주)의 갑질 및 횡포 관련 - 태풍 차바로 인한 산업단지 토사유출 민원에 대해서는 기록적인 폭우(천재지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 양산석계산업단지(주)는 귀하와 정식으로 서명한 계약에 따라 중도금 납부를 요청하였으므로 중도금 미납에 의한 계약해지는 위법요소를 찾기 어렵습니다. - 또한 양산석계산업단지(주)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공문으로 조합원 모집 중지 및 계약서와 승인고시 등의 관련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조합원 모집에 대한 일체의 승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2016. 4. 29. 용지매매계약의 효력 관련 - 사전 용지매매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목적용지의 매매 대금 정산에 관한 기준은 최초계약금이 아닌 최종확정분양가라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방적인 변경이라 볼 수 없고, 정식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항으로 이전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가칭)양산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조합원 요구사항 관련 - 추진위의 계약금 및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신규계약자에게 부지가 매입된 사항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을 맺은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려우며 - (가칭)양산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양산석계산업단지(주)에게 가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일반 민사문제로서, 행정기관인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향후 조치계획 -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양산석계산업단지(주)와 제일특수화물(합) 사이의 계약상으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우리시에서의 임의계약해지도 불가한 사항이며, (가칭)양산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양산석계산업단지(주)와의 용지매매 계약 정상화 건도 계약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항으로 계약정상화 대상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후 (가칭)양산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계약해지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규계약자에 기존 조합원을 인계하도록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19.1.31.	금호리첸시아 공사현장 관련 불편사항 개선 요구	건축과	- 지금까지 금호리첸시아 공사 현장 책임자에게 작업자 교육 실시 및 야간시간대 작업자제, 비산먼지 억제조치 준수 철저 및 주기적인 인근 도로청소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요청시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2017년 8월, 11월 두차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앞으로도 생활도로구역내 덤프트럭 과속, 역주행, 중앙선침범, 불법주차 사항 중 불법주차된 건 설기계(덤프트럭)에 대하여는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처리를 할 예정이며, 이 외 생활도로구역 내 과속, 역주행, 중앙선침범에 대하여는 양산경찰서 소관사항으로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금호리첸시아 건축공사 현장의 터파기 공사중 지하수 유입이 발생하여 터파기공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인근 건물의 균열과 도로침하 등이 확인되고 있어 일부 건물에 대하여 부분 침하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	처리결과
			- 또한, 시공사인 금호산업(주)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해소와 공사장 주변의 지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변건물 및 도로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요청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피해건물 및 도로에 대한 보수·보강 실시 또는 공사중단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피해 주민들의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는 시공사로 하여금 적극 해결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19.2.8.	투표구 변경에 대한 건의	행정과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 '증산우성'마을은 행정구역상 독자적 마을이 아닌 '가촌'마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31조 제2항의 '행정리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투표구 변경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2018년 12월 27일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일부개정령으로 '증산우성'마을이 '가촌'마을에서 분리되었고, 2019년 1월 14일자 투표구 변경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일부개정령으로 분리된 마을이 기존 투표구에 포함되어 수정 반영된 것으로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음 선거 전에 주민 및 읍면동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선거인수, 지리,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예정입니다.
19.2.12.	신고리4호기 부설허가 전면재검토하라	의회사무국	-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양산시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양산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 양산시의회 소속 시의원들의 의원활동과,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 그 외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55-392-8624)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9.2.25.	주남마을 지역주민 장기적 고충 사항 처리 요청의 건	도시과	1. 기존 주남마을 길의 확장과, 교통 가능한 피양 공간을 확보 요청 - 주남마을에서 이용중인 마을 안길은 현황상 도로로 공유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대다수로, 2018년에 주민건의를 받아 피양공간 확보를 위해 사전 조사 및 사업시행준비를 하였으나 주남마을 해당 토지주 등의 반대로 사유지 토지 사용 승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 주민 통행권 확보를 위해 토지사용 등 제반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피양공간 확보사업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2. 영산대 앞 도로 공동사용 및 시 차원의 정비 요청 - 현재 영산대학교 내부 도로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통행 가능하며, 대학교 내부로는 사유 재산으로서 시 예산을 투입한 정비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산수로 및 하천수로의 상습 수해방지를 위한 옹벽공사 조기시행 요청 - 주남동 991-3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9년 계류보전사업(사방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계류선형 변경이 수반되는 필지별 편입 면적 조정을 요구하여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토지사용 부동의로 사업 시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계류선형 변경 없는 토지사용 동의시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사업시행 재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 마을 하천수로(산수로에 연결된 아래 수로) 약 150m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신 하폭이 좁아지고 수로관이 막혀있던 구간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을 위해 2018년 『주남마을 세천 정비공사』를 통해 개선완료 하였고, 금년에는 상류부 방향으로 하천 흐름에는 지장은 없으나 일부 퇴적 및 세굴 구간 정비를 위해 장비를 투입하여 4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 주남마을 순환도로를 신설하여 기존도로망과 연결 요청 - 민원을 제기하신 주남마을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에 개설에 대하여는 기존 마을안길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시 현황도로를 정비 및 확장하는 방안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3.	밤마다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문화관광과	- 2019. 3. 7. 16시경 문화관광과 업무 담당자가 기라성 노래연습장에 현장 방문하여 업주와 협의한 결과, 민원인이 지적한 부분과 관련하여 소음에 관하여는 음량을 조절하고 출입문을 닫고 영업하기로 약속하였으며 - 빛 공해에 관하여는 협조부서(건축과)에서 업주와 유선으로 연락하여 야간 노래방 조명으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함을 설명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한 결과 야간에는 간판을 소등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3.4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공공공지 펜스 철거 요청	공원과	- 귀하께서 언급하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맞은편 공공공지(물금읍 범어리 698-15번지)는 전체 면적의 약 60%가 녹지이며, 나머지는 자전거도로와 인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인접한 상권내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여러 군데 따로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공공공지의 설치목적은 주거환경 보호, 도로변 소음·진동·공해·시선 등을 차단하는 것에 있으므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	처리결과
19.2.21.	삼호동 230-1번지 소방도로와 연결되는 소방도로 개설 요청	도시건설과	-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해당 위치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도로망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현재의 통행량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도로개설의 시급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단기간 내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시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계획을 검토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	양산시 의회에서 개인택시 타이어 MOU를?	의회사무국	- 우선, 이번 MOU는 넥센타이어 주식회사와 양산·부산 개인택시조합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급대상이 양산·부산 개인택시조합에 한정됩니다. 조합에서 인터넷 최저가 상품 구입을 통해 타이어를 수급해 오던 것을 우리시 향토기업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양산·부산 개인택시노동조합과 MOU를 체결한 넥센타이어 주식회사는 양산시에 본사를 두고, 생산품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시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기업 회생으로 증대된 세수를 통해 지역 경제 살리기 및 양산시민 전체를 위한 정책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25.	불법헨스 철거에 의한 녹지훼손 보호시설 설치요구	공원과	- 귀하께서 건의하여 주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공공공지 환경개선사업은 펜스 설치 기준과 목적, 위치 및 용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올해 상반기내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완료 후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공공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2.	죽전 낚시터 재입대 반대 건의	허가과	- 지역주민의 낚시터 우회길 사용 통제 건에 대하여 낚시터 주변 도로에 통제하고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 떡밥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악취 및 해충 발생 건에 대하여 악취 및 해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하절기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피허가자에게 수질 개선 및 주변 청결을 요청하여 발생 원인을 차단하겠습니다. - 낚시터 스피커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 건에 대하여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방송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불필요한 방송은 하지 않도록 피허가자에게 요청하겠습니다. - 낚시터 이용자의 불법 쓰레기 투척과 주변 불법주차 및 무단 소각 건에 대하여 피허가자에게 낚시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 또한, 낚시터 주변에 위치한 매점 건물이 방치된 채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 낚시터 주변 유기견, 유기묘 번식 및 유기동물로 인하여 주변 보행이 위험한 것에 대하여 피허가자에게 주변 환경 개선을 요청하여 유기동물의 접근을 막겠음 - 죽전낚시터의 허가기간이 2019. 5. 31.까지로 현재 낚시터업 허가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낚시터업 허가 연장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사용 및 낚시터업 허가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24.	오·폐수 자가펌프장 관리에 관한 사항	하수과	- 자가펌프 설치는 오수본관보다 저지대 지역에 위치하여 현장 여건 상 자연유하가 불가능할 경우 설치하게 되며, 설치 후 자가펌프는 개인 배수설비 시설이므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전기 요금은 개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중계펌프장을 저지대에 설치할 경우 이 지역 현장 여건상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관로가 사유지 마당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분쟁발생 소지 및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불가하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 금회 재조사하여 자가펌프 없이 처리 개선될 수 있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4.26.	활력 경제도시 양산에 어울리는 건축조례 제정 바랍니다.	건축과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공장 및 물류시설에 대하여 연면적 합계에 따라 조정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을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조례 개정시 상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완화비율에 대하여는 주변 여건 및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 현재 우리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사회복지과)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 우선 발달재활서비스는 양산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신청자에게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교부하는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예산 또한 복지사업 및 수요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	처리결과
			- 우리시는 2016년 5억9천만원, 2017년 6억7천만원, 2018년 7억9천만원, 2019년 8억5천만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을 매년 증액 확보하고 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또한 총 사업비를 작년 대비 3억원 증액하였으나 지속적인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서비스 수요증가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즉시 서비스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리시는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기자 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	평산동 아파트 건설 반대	공동주택과	- 귀하의 탄원내용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바,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사업부지 굴착 시 벽체강성이 우수한 C.I.P공법을 적용하여 굴착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착공신고 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구조전문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일조와 관련하여 기존 주택의 일조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추가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공사 진행시 소음 및 분진,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서 착공신고 전 시공사와 구체적인 협의 후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소음·진동발생 저감대책 등을 사전 수립하고 통학시간 중에는 대형공사차량 통행 및 크레인 운행을 자제하여 공사를 진행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7.	소주공단로10(주남동) 일대 폐열회수시설 취득 요청	자원순환과	- 상기 소재의 웅상환경시설은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자산으로 우리시와 양도 관련 협의 진행 중이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현 부지의 사용목적 및 용도결정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부지의 용도는 지역주민들과 주변 기업체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빠른 시일 내에 용도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	대운산 자연휴양림, 생태숲, 향노화체험센터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계획 수립 건의	교통과	- 귀하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대운산 자연휴양림은 연간 1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이용 중이며, 현재 진입도로가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확·포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가 추진하는 양방향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2019.10.), 대운산생태숲(2019.12.)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상 정기적인 노선버스의 운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다만, 운송원가 대비 이용수요 부족으로 적자운행이 예상되는바, 재정지원 방안이 같이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확정적인 답변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해당 노선 신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종합 검토하여 노선 신설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정규 운행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9.	동면 특성화고 건립 반대	평생교육담당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호에 따르면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의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감 관장사무로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초중통합학교는 2020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매년 양산지역 중학교 졸업생 중 250명 내외가 타지역 특성화고로 진학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 특성화고 설립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향후 석곡산 지역의 일반 학교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면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9.	주공1단지 철거에 따른 경동 메르빌 피해	원스톱허가과	현재 진행중인 철거공사는 범어주공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로, 이로 인한 인접 주민들에게 다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건축물 철거 공사는 포크레인에 장착된 크라샤 장비의 높이 한계가 있어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는 3~4층 주요 구조물을 철거한 후 나머지 5층 부분을 내려 앉히는 공법으로 진행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철거된 건축물의 잔재로 먼지를 만든 후 5층 건축물까지 크라샤로 압쇄하여 콘크리트 및 철근을 해체토록 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공법으로 변경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당초 건축물 철거 신고 시에도 인접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계법 규정 이상의 RPP(흡음) 판별을 6m 높이로 설치토록 하였고 철거작업 시 충분한 살수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이번 귀하의 민원사항을 토대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1.	중부동 중앙어린이공원 놀이터 개선건	공원과	- 귀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공원 내 모래놀이터 환경개선 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시 소재 공원 내 모래놀이터는 중앙어린이공원 포함 24곳이 있으며, 언급하신 중앙어린이공원 내 모래놀이터는 정기적으로 친환경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의하신 중앙어린이공원 바닥포장재 변경은 추후 예산 확보 및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	처리결과
			-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바라며, 공원이용에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양산시 공원과 공원관리팀(055-392-318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26.	양산시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교통과 도로시설과	우리 시는 출퇴근 시간 남양산 및 물금TG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하이패스 차로 증설 등 교통체증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 먼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남양산TG의 하이패스 2(전용1, 혼용1), 일반1인 운영방식을 2019년 하반기 중 하이패스 3(전용1, 혼용2)로 개선할 예정이며, 현재 일반(통행권 발급) 1개 차로 증설에 관한 2020년 사업계획을 본사에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 물금TG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는 관계기관(한국도로공사, 양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양산시)이 협의하여 하이패스 차로 확대, 제방로 접속교차로 효율 극대화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통게이트 이용고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일반차로 1개를 하이패스 차로(혼용)로 증설할 예정(2019년 하반기)에 있습니다. 또한, 건의해 주신 고가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증산리 일원에 하이패스 전용나들목 설치(도로공사, 양산시)를 추진 중에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5.29.	물금성당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요청	도시계획과	- 해당 구간 사면 발생에 따른 안전조치 요청에 대하여 기 계획된 옴타리펜스를 붙임문서와 같이 가드레일 및 차광망으로 변경 설치토록 협의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산시로 접수하신 민원번호 제2019-538000-0179385호에 따른 답변은 도시계획과-1969(2019. 5. 24.)호로 회신하였으나, 등기우편 발송 과정에서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	주남마을 의료세탁공장 확장이전반대	웅상보건지소 허가과	- 우리시 소주공단5길 5 소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원크리닝은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을 신고 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증발량이 시간당 2톤, 3톤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은 하루배출량이 52.33㎥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 소주공단1길 97 소재에 이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세탁업에 대한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 및 사업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거해 판단해볼 때, - 해당 업체 소재지의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 허용기준 등 관련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지시설 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 회아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하수도관리청(울산광역시)에 관련서류가 접수되면 협의할 예정입니다. - 사업장이 이전하여 운영할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환경관련법 상의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세탁업과 관련한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근거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확장 이전할 사업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과 악취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설치·운영할 시설에 대한 적용사항으로 「소음·진동관리법」 및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될 경우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등록에 대하여서는 신고 관련 서류 접수, 제2공장 현장 시설 조사 시행 등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6조, 제7조에 의거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17.	하북면 지산리 농로 설치요청	원스톱허가과	- 우리시에서는 하북면 지산리 324-1번지(지목: 답)의 농사용 통행민원에 대하여 인접한 지산리 224-10번지 신축 건축물 건물주와 민원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쌍방간 대화 및 협조 요청 등으로 민원 해결에 노력하였으나, 이해 당사자 간에 원활히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아울러, 도로법 및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내 토지 통행 문제는 현행법령상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가 불가한 사항으로써,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토지 통행권 등은 민사적으로 이해 당사자 간에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9.	집문 바로 앞 인도가 생긴답니다.	공동주택과	- 북부동 245-5번지 일원 도로(북안북 9길)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이며, 북부동 245-5번지 일원 상 북부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인한 교통개선 사항은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관할경찰서 협의)를 득하여 교통개선대책이 결정[소로 2-65호선 : 중앙선 없는 생활도로 운영(차로폭원 B=5.5m, 보행공간 B=1.15~1.95m, 블록포장)]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도로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현장지시 하였으며, 향후 계속해서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엿보기

서진부 의장



아파트 건립 반대 집회 현장 방문

김효진 부의장



넥센-양산·부산 개인택시조합 타이어 공급 업무협약

최선호 의원



호포교 개통 지연 민원 현장 방문

이종희 의원



'정신질환자 포용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 주최

이장호 의원



화야제 기간 중 민원 버스킹

문신우 의원



삼성동 주민간담회

박일배 의원



조평마을회관 복합민원 해결 간담회

정석자 의원



젊음의 거리 현장방문

곽종포 의원



양우3차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박미해 의원



제74회 식목일 행사(황산공원)

김태우 의원



석산 동원2차아파트 관련 민원 현장방문

이상정 의원



웅상회야제 행사 격려

이용식 의원



원도심 기반침하 현장방문

박재우 의원



상북면 주민간담회

김혜림 의원



양산시민 건강 숲 조성사업 현장 방문

정숙남 의원



증산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 방문

임정섭 의원



원동매화축제 행사 격려



현장활동

기획행정위원회



무궁애학원



무궁애학원



밖으로나가자숲어린이집



시립통도사어린이집

도시건설위원회



메기들공원



원도심 기반 침하 현장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진,홍등지구 도시개발사업장



벤치마킹

기획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사업 견학

도시건설위원회



제주도 일원 선진농업시설 견학



의정활동 이모저모

1		4	
	2	5	6
		7	
3			

1. 3·1절 기념행사
2. 3·1만세운동 100주년 재현행사(태극기 손도장 퍼포먼스)
3. 양산시 특활학교 개소식
4. 석산초·중 통합학교 신축공사 안전지원제
5.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6. 제5회 양산시장이 어르신그라운드골프대회
7. 제5회 바르게살기 양산 한마음 활성화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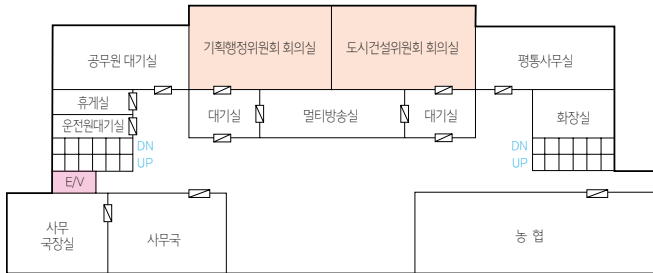


의정활동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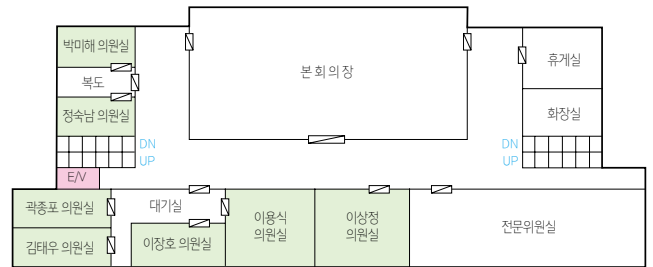
1	5
2	3
4	6
	7
	8

1.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양산시선수단 결단식
2. 2019년도 양산시 여성인재학당 입학식
3. 진로박람회
4. 제주도 의정연수
5. 제4대 양산시청소년의회 의원위촉식
6. 쌍벽루아트홀 개관식
7. 소통전화기 제막식
8.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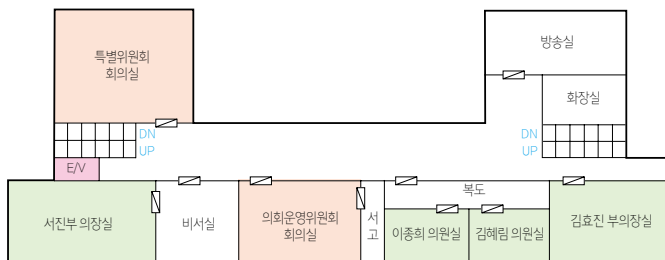




1층



2층



3층



4층



서진부 의장 392-8500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위원장 392-8547

이상정 의원 392-8565

김태우 의원 392-8545

이장호 의원 392-8553

사무국장 392-8600

의회운영전문위원 392-8650,8652~3

의장부속실 392-8503~4

기획행정위원장 정석자 위원장 392-8530

이종희 의원 392-8557

최선호 의원 392-8563

김혜림 의원 392-8555

의정팀 392-8611~6

기획행정전문위원 392-8660,8662~4

이용식 의원 392-8551

곽종포 의원 392-8549

박미해 의원 392-8561

의사팀 392-8621~5

도시건설전문위원 392-8670,8672~3

김효진 부의장 392-8510

도시건설위원장 임정섭 위원장 392-8540

문신우 의원 392-8520

박재우 의원 392-8543

정숙남 의원 392-8559

FAX 392-8619

FAX 392-8679



열린의회, 시민과 함께 호흡합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생방송 시청 안내

양산시의회 회의를 생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회의를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시민에게 또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www.yscouncil.go.kr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 주소로 접속하시면
모바일 생중계 시청도 가능합니다.



소통하는 열린의정!
 역동적인 희망의회!



양산시의회
 YANGSANCITYCOUNCIL

<http://www.yscouncil.go.kr>
 (우)50624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TEL. 055)392-8611~6 FAX. 055)392-8619